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年 2月

博士學位論文

警察의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權勢徒

警察의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2018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權勢徒

警察의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鍾 九

이 論文을 博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權 勢 徒

권세도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문 정 민 (印)

委 員 전남대학교 교 수 류 전 철 (印)

委 員 조선이공대학교 교 수 김 운 곤 (印)

委 員 남부대학교 교 수 정 병 곤 (印)

委 員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종 구 (印)

2017 年 12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	6
제1절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패러다임과 범죄피해자	6
1. 전통적인 형사사법 패러다임	6
2. 범죄피해자의 지위	8
제2절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변화	11
1.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	11
2. 피해자학의 관점	13
가.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대두	13
나. 피해자학의 등장	15
3. 회복적 사법의 관점	17
가. 회복적 사법의 등장배경	17
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개념	18
다.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연관성	20
제3절 경찰과 범죄피해자	21
1. 형사사법에서 경찰의 역할	21
가. 형사사법에서 경찰작용	21
나. 사회변화와 경찰의 역할변화	24
2.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의의	25

가. 범죄와 범죄피해자 25
 나.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30

제3장 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 34

제1절 영국 34

- 1. 피해자 보호·지원 관리권한의 지방이관 34
- 2.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 35
- 3. 다기관 협력시스템 36
- 4.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37

제2절 미국 38

- 1. 범죄피해자 보호의 방향과 조직 38
-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검찰의 협력체계 40

제3절 독일 41

- 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직과 운영 41
-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내용 42

제4절 일본 44

- 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직과 운영 44
-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내용 45
 - 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46
 - 나. 피해자 상담 및 카운슬링 47
 - 다. 범죄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 보호 47

제4장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51

제1절 경찰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51

- 1.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51
- 2.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 증대 52
- 3. 2차 범죄피해화 예방 53

4. 범죄피해자 기대에 부응	54
제2절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55
1.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피해와 특성	55
가. 강력범죄	55
나. 성폭력범죄	58
다. 가정폭력범죄	60
라. 재산범죄	61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의 문제점	62
가. 강력범죄의 경우	62
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63
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65
라. 재산범죄의 경우	66
3. 수사과정에서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보호의 개별화	67
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67
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68
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71
라. 재산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74
제3절 수사단계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75
1. 서설	75
2. 경찰 피해자 수사의 정의와 유형	77
가. 피해자 수사의 정의	77
나. 피해자수사의 유형	78
3.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수사	79
가. 초동수사	79
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의 문제점	84
4. 부수적 수사	86
가. 신변보호조치	87
나. One Stop 서비스	90

5. 피해자 조사	90
가.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90
나. 피해자 면담	93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94
제1절 경찰의 미래지향적 역할변화	94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94
2. 가해자 중심사법에서 균형적 사법으로의 변화	95
3. 경찰의 임무영역의 확대논의	96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	97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개선방안	97
가. 선입견·고정관념의 배제	97
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교육 실시	98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행태의 개선방안	99
가. 초동수사 행태의 구체적 개선 방향	100
나.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강화	104
다. 피해자 조사의 구체적 개선방향	106
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108
가. 경찰의 독자적 업무영역 발굴	108
나.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109
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의 도입방안	111
제6장 결론	113
참고 문헌	116

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Kwon, Se-Do

Advisor : Prof. Kim, Jong-Goo,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paradigm, it was focused on only the criminal punishment, and the victim of the crime was regarded a forgotten existenc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o restore the criminal injury, the paradigm of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by the police needs to be changed as well. Since the mid-1980s, there has been a change in perceptions of victims of crime,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nd their rights.

At the point of that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by the police can be the best crime prevention in that it can raise a sense of solida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general public who are victims of potential crime as well as actual victims of crime. Police have many opportunities to contact the public from the crime prevention stage, and the crime scene, as well as the after the crime finished. Thus, police can be the first contact person with the victim. Therefore, measures to protect crime victims start with police activities. In this regard, the police are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hat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the most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 can be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community c

apacity through th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However, in spite of the police's efforts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in reality, the crim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s still carried out in the logic of prioritized practices and performance priorities. So, it can be said that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police was closer to symbolic than practical.

Until now,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police has been mainly focused on victims of violent crime. However, in the light of the diversity of crime, victims of crime are also affe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various crime patterns. Therefore, measures to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police nee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or each type of crime. Police are also in the position to find crime victims first than any other organization and play a decisive role in the intervention at the initial stages of the victim. Therefore,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protect crime victims during the initial investig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by police,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investigative police. In order to be effective in the scope of the debate, the police will discuss only the inevitable part of the discussion related to victim support and focus on the police measur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chang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aradigm of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police should be changed as well. Also by this paper, I want to show the correct direction to protect the criminal victims by police as an institution that can establish and implement the most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police should be individualized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police officer who first seeks victims of crime in a crime scene. In particular, the primary investigation focuses on the problem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aims to improve the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for trust of the people and the p

olice. For the purpose of above discussion, the following contents are covered.

At first, this paper evaluates the status of crime victims in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paradigm. It also explains that the perspective of victimology and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ct as a trigger for the paradigm shift in criminal justice. And examining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criminal justice as the police function of the police, discuss the expansion and role change of the police function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Through the definition of crime and crime victims at the police level, the scope of crime is defined and the status of victims of crime is examined at the police level. Also, for the various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by polic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by the foreign police and its operation and protection contents are introduced.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the measures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ccording to crime typ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s according to each crime type for violent crime, sexual violence crim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roperty crime. And it investigates the problem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for victims of crime. In addition, the measures to protect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stage are divided into primary investigation, subordinate investigation and crime victim investigation. After reviewing these it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start from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are presented as practicable. Police should be involved in criminal victim-centered thinking and procedur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to the filing, acceptance, dispatch and investigation. These efforts will not only give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but also match the factual truth of the case to the discove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사법과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범죄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론과 관련기관들의 인식 전환으로 어느 정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의 주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실질적이라기보다 거의 구호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형벌권을 독점하는 국가와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즉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첫 단계에서부터 관심은 발생한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범죄자의 체포 그리고 증거수집과정에 집중된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일반 대중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때로는 범죄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언론의 언저리에 등장할 뿐이다. 국가와 범죄자의 대칭구조가 형사사법제도로 정착되고 고착되는 오랜 시간동안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규범을 회복하는 절차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경찰은 범죄 피해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형사사법절차의全般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범죄발생 직후 최초로 위기 상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 검거 및 사건 해결 등 기본적인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그 역할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³⁾ 보복 위험으로부터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수사진행

1) 김연수/이재영,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5(1),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30면.
 2) 정지운,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 정책”,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11, 78면.
 3) 박봉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학연구』 제42권, 한국법학회, 2011, 293면.

과정과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등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경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해자 검거 및 사건 해결 외에도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범인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 인권은 중요시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찰활동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피해자에 대한 경찰활동이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지금까지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은 주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한 ‘확실한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의 다양성에 비추어보면 수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범죄와 해당 범죄의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온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경찰에게 법적인 권한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지 않아 미비하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호의 부담을 갖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힘과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법적인 권한 없는 자에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형사사법절차의 흐름 상, 경찰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른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없이는 단지 일회성에 그칠 뿐이다.⁵⁾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일반 국민과 경찰 사이에 연대감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범죄예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발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상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피

4)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현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136면.
 5) 황정익,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428면.
 6) 김학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27(2), 미국헌법학회, 2016, 참조.

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의 결여와 범죄피해가 신체적으로 확실한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은 그 방향 설정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은 범죄예방단계에서부터 일반 국민과의 마주할 기회가 많고, 범죄현장은 물론 범죄 종료 후에도 가장 먼저 피해자와 접촉하는 관계로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경찰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범죄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담당조사관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기술적인 면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입법 규정이 부족할 뿐더러 범죄수사는 여전히 가해자 검거위주의 관행과 실적 우선의 논리 속에 운영되고 있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내부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다양한 범죄양상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추상적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 왔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은 범죄유형별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각 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의 피해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범죄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질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가장 강력한 보호는 가해 범죄자를 검거하여 형사처벌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검거를 위한 초동수사가 오히려 범죄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수사경찰의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방향설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은 다른 기관에 비해 범죄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고 범죄피해자 또한 가장 먼저 접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의 초동단계에서 개입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우호적이고 친절한 대응 자세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향

후 범죄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수사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만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조치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의 경찰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범죄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형사사법의 최초단계인 경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를 범죄유형별로 개별화하고자 한다. 특히 초동수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경찰의 신뢰구축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표현을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사용은 추측컨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호란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핌’을 의미하고 지원이란 ‘지지하여 도움’을 의미한다. 두 용어는 동의어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정책의 수립 및 이념과 구체적 과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범죄피해자보호의 이념과 과제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의 이념과 과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범죄피해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의 혼재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위해서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업무처리방식의 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은 조직구성과 예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특히 수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논의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패

러다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피해자학의 관점과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형사사법에서 경찰의 역할을 경찰의 경찰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 변화에 따른 경찰작용의 확대와 역할변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 범죄와 범죄피해자의 개념정의를 통해 그 범위를 확정하고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우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직과 운영 및 보호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범죄유형에 따른 실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추출하기 위해서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그리고 재산범죄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의 개별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수사단계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초동수사, 부수적 수사 그리고 범죄피해자 조사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방안을 위한 전제로서 경찰의 미래지향적 역할변화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과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의 기본이념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검토한다. 특히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경찰의 임무영역의 확대, 가해자 중심사법에서 균형적 형사사법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인식의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행태의 개선방안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방향설정을 밝히고, 국민과 경찰의 신뢰구축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문헌분석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확인된 자료 조사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제2장 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

제1절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1. 전통적인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통적 형사사법 패러다임은 책임응보에 중심된 응보형법과 행위자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설정하고 있는 재사회화 형법을 핵심적인 축으로 한다.⁷⁾ 전통적인 형사사법은 법익보호를 위한 형법의 임무를 범치주의적 관점에서 정형화한 후에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해 국가의 독점적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적 과정준수를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집행한다. 범죄는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국가가 규범을 침해한 범죄자에게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범의 힘 앞에 복종시킴으로써 국가의 법규범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법규범에 대한 국가의 대응구조는 형사사법제도를 국가와 범죄자라는 대칭구조로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제도가 형성되게 된 것은 범죄의 제1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권위를 손상당한 국가라는 인식이 저변에 놓여 있다.⁸⁾

국가와 범죄자가 형사사법제도의 대칭구조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은 국가의 형벌권 독점과 근대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독점은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의 사적 복수의 전통을 종식시켰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현실적 속성을 체험한 근대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은 형법실현 중 특히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유와 인권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적 이념과 형법적·형사소송법적 법원칙을 현실적인 법제도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 형사사법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대응과 재사회화에 지향점

7)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 피해자학회, 2006, 69면.

8) 김일수,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역학관계”, 『법률구조』 통권 제64호,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 7면.

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패러다임도 범행해소를 둘러싸고 국가형벌권과 범죄자간의 일면적인 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계몽사조에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은 개인윤리적·형이상학적·신화적 차원을 떠나서 법익의 보호, 즉 사회 내에서의 1인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객관적 실존조건에 해당하는 생명·신체의 완전성, 명예, 의사활동의 자유, 재산, 사법기능, 그 밖의 일정한 사회질서 등을 보호할 임무만을 지되, 그것도 법질서 내에서 다른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있을 때에는 형법은 이에 자리를 양보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형법의 법익보호과제는 일반인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한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의적이던 국가권력의 행사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한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을 제한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임무와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대응방식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전통적 형사사법은 국가와 범죄자의 대칭구조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범죄가 발생하면 형벌권을 독점하는 국가와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즉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첫 단계에서부터 관심은 발생한 범죄의 사회적 과장과 범죄자의 체포 그리고 증거수집과정에 집중된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일반 대중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때로는 범죄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언론의 언저리에 등장할 뿐이다.

국가와 범죄자의 대칭구조가 형사사법제도로 정착되고 고착되는 오랜 시간동안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규범을 회복하는 절차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9) 이에 비해 형법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보호는 제2차적인 임무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고, 이와는 달리 형법은 사회통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 그 자체의 보호에 제1차적인 임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 밖에도 절충적 입장에서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와 최소한의 윤리의 보호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김일수, “형법이론의 최근 동향”, 『재판자료』 제49집, 법원도서관, 1990, 33면).

2. 범죄피해자의 지위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의 범죄사건 해결의 핵심에서 범죄피해자는 주변인에 불가하여 때로는 잊혀진 존재로 가벌성 판단에서 소외되었다. 또한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절차의 목적에 가려진 채 증거방법이라든지 증거획득의 객체로 취급되었다.¹⁰⁾ 이러한 현실은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현상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응방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국가형벌권 확립 이전인 고대 게르만 시대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의 부족단위에서 이들만이 갖는 규칙을 깨뜨리는 구성원에 대하여 부족의 우두머리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형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부족들 간에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페데(Fehde)’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사적 복수를 허용하는 방식이 이어져, 게르만시대부터 일반화되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유럽 전역에 성행하였던 페데는 혈족간의 유대관계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범죄자에 대하여 복수에 있다고 보았다.¹²⁾ 즉 사적복수가 인정되었던 이 시대에 범죄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갈등을 해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되었던 시기였다.¹³⁾

중세에는 사적 구제의 수단으로 자구행위가 페데의 형태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페데는 봉건시대를 장악하였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혈족의 구성원들은 혈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 혈족 구성원의 지도자 지휘 따라 무기를 손에 들었다. 페데의 형태로 인정되는 자구행위는 게르만족의 피의 복수를 연상시켜 폭력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사적인 청구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 사이의 갈등은

10) 이용식,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5면.

11)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54-58면 참조.

12)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0면.

13) 이때의 범죄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란 지금의 관념처럼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류전철, 앞의 논문, 55면).

결국 기사가 거느리는 소작농민들에게 그 폐해가 전가되었다. 즉 폐대를 빙자하여 복수의 대상이 된 성주의 지배하에 있는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농민들에게 복수를 위한 분풀이가 거리낌없이 자행되었다.¹⁴⁾ 이처럼 공공질서를 끊임없이 위협에 빠뜨리고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복수의 참극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다.¹⁵⁾

이러한 갈망은 사적복수가 만행되었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公刑罰체제의 행태로 변모하면서 국가권력이 점차 강화되었다. 즉 폐대가 행해지기 전에 국가의 형벌권을 통해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이에 따라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강화된 국가권력에 형벌권이 專屬되게 되었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국가 권력이 강화되기 이전의 주체는 범죄피해자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적 복수라는 자기사법(自己司法)을 금지한 것에 대한 문화적 성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주체가 범죄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각국의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지위가 강력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소, 사소(私訴), 부대소송 등이 그 예시라 하겠다.¹⁶⁾

국가형벌권 형성 이후에는 잔혹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사적복수의 폐해를 극복, 국가권력의 강화에 의한 근대국가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중립적 입장에 있는 국가에게 專屬되게 되었다. 즉 국가 형벌권의 형성에 의해 범죄를 둘러싸고 있는 역학관계는 기존의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가해자 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중재자에서 직접당사자로 전환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인에 대한 처벌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가 범죄자와 동등한 지위로부터 떨어진 후에, 마침내 국가의 형사사법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형법이 피해자를 중립화하면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국가

14) 류전철, 앞의 논문, 56면.

15) 류전철, 앞의 논문, 56면.

16)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4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54면; 류전철, 앞의 논문, 56면.

형벌권 형성 이후에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은 범공동체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형성되었다.¹⁸⁾ 국가가 피해자의 이익을 대신한다는 인식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표명하는 근거가 된다. 즉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이익침해’라는 기본전제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이다.¹⁹⁾

19세기 이후에 국가에 의해 독점된 형벌권은 그 행사과정에서 그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당시에 국가는 형벌의 독점권을 남용하는 등, 자의와 태만으로 인하여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부당하게 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²⁰⁾ 또한 강압적 신문과 불법적인 감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범치국가적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소송주체성, 무기평등의 원칙 등으로 엄격한 절차적 형식주의를 요구하였다.²¹⁾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에 대한 반발이 계기가 되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진 범치국가적 형사절차의 확립은 범죄자(피의자 또는 피고인)로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결국 이러한 관심은 범죄자를 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보는 범죄학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형성과 더불어 범죄자의 권리와 처우를 강화시킨 범치국가적 형사절차는 범죄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점차 주변으로 나아가 인식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²²⁾

여기에 형벌이론이 응보에서 목적형으로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목적형벌론에 의하면, 국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된 개인의 범익 혹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방위하는 역할을 맡는다.²³⁾ 여기서 범죄피해자라는 존재는 국가형벌권 발동의 사실적 계기에 불

17) Winfried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2.Aufl., C.H. Beck Verlag, 1990, S. 70.

18) 이주희,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388면.

19) 이용식, 앞의 논문, 16면.

20) 류전철, 앞의 논문, 57면.

21) 이주희, 앞의 논문, 389면; 류전철, 앞의 논문, 57면.

22) 류전철, 앞의 논문, 57면.

23) 류전철, 앞의 논문, 58면.

과할 뿐, 국가의 형사절차에서 실제진실발견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 형벌의 본질은 국가가 범죄상황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대리인 혹은, 양 대립 당사자에게 중재역할자의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사적 이익을 배제한 채, 국가 대 범죄인의 관계를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의 주변에 머무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²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좀 더 보호하고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에서는 지엽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굳건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대 범죄자의 대칭적 구조에서 범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그 자체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익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변화

1.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는 각 시대적 상황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의 중대변수는 ‘국가의 성립’과 ‘국가권력의 강화’라고 꼽을 수 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형사절차는 국가와 범죄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관계로 도식화되었고, 범죄피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사실적 근거이면서, 형사절차를 통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²⁵⁾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변

24) 이용식, 앞의 논문, 5면.

25)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p.79.

화되면서 그로 인해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노력이 진행되었다.²⁶⁾ 범죄피해자도 사회구조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속한다는 범죄학적 인식²⁷⁾이 부각되면서, 피해자학의 연구 성과들과 실천적 노력들이 결합되어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절차법적으로 피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전개되었으며, 피해자의 역할이 더 이상 증인으로서의 중성적, 지엽적인 역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다.²⁸⁾

범죄자와 국가 간의 법적 관계에 중점을 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갖는 형사사법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²⁹⁾

첫째, 형사정책의 위기이다. 범죄인의 재사회화사상은 치료교정실무의 터무니 없는 성과 때문에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인의 치료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독일뿐만 아니라 북미 및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범죄통제의 실효성 있는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형사정책적 변화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또한 형사사법의 업무과정도 새로운 형사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증가하는 경미범죄와의 투쟁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손해배상과 형벌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제도의 활용가능성이 고려되면서 범죄피해자관점이 부각되었다.

둘째, 피해자학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관계, 피해자의 범행기여, 피해자의 피해, 피해자편에서의 범죄예방, 고소인으로서의 피해자, 피해자가 되는 과정, 어린이 또는 부녀자 등의 특별한 피해자로서의 지위, 형사절차를 통한 제2의 피해자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연구성과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의미를 해명하는 결과를 내면서, 범죄행위가 일면적으로 범죄자의 일탈행위라는 점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형법적 사회통제

26) 류전철, 앞의 논문, 58면.

27) 이주희, 앞의 논문, 391면.

28) 류전철, 앞의 논문, 58면.

29)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호, 안암법학회, 1993, 315면.

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인정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변화에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⁰⁾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해자-피해자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범죄 대응방식으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율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 모델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갈등관계로 파악하고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화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³¹⁾

2. 피해자학의 관점

가.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대두

세계 각국의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범죄피해자 쪽으로 기울게 한 힘의 원천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소홀이 정의의 요구, 특히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인식의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 형사사법 패러다임에서는 범죄피해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간과되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³²⁾

첫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피해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둘째,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 등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절차상 어떠한 공식적 역할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를 순수 도구적 존재로만 인정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실

30) Heinz Schöch,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NStZ 1984, S.386.

31) 김용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과 발전과정”, 『서울법학』 제5권 제2호,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2002, 86면.

32)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106면.

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권한 또한 박탈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자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열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요구를 간과한 채,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범죄자의 처벌에만 치중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은 정의의 요구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화되기도 하였다.³³⁾

오늘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법의 발전사에서 국가 형벌권의 확립과 함께 형사사법이 피해자에 의한 사적복수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를 중립화시켰던 근대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이러한 의문은 피해자 운동으로 표출되었다.³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피해자의 처우나 지위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문제삼은 정치적 경향은 피해자이익을 추구하는 피해자의 르네상스시대의 진정한 개막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범죄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페미니즘운동의 성장과 함께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숨은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약 30여 년 동안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수단 내지 정책적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관점들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점점 더 형사사법의 중점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피해자 원조 내지 지원, 형사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경험 및 국가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의한 배상으로 네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33) 김성돈, 앞의 논문, 107면.

34) 서구에서 60년대와 70년대부터 전개된 피해자 운동에 동인이 된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꼽는다. 첫째,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및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재사회화 형사사법 모델에 대한 거부. 둘째, 유럽과 북미에서 쟁점이 된 피해자의 권리 신장 및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강경한 형사정책적 기류의 형성. 셋째, 페미니즘 운동의 성장 및 그에 따른 개인 간의 폭력범죄에서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고조 등이다(김성돈, 앞의 논문, 각주4)에서 재인용).

35) 김성돈, 앞의 논문, 107면.

나. 피해자학의 등장

피해자학(victimology)이란 범죄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생물학적·사회학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시 피해자의 역할과 형사사법에서 피해자보호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³⁶⁾ 이러한 피해자학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형사사법과 사회조직 및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범죄학과 형사사법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³⁷⁾ 피해자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던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을 범죄학과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하려하였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범죄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슈프링고름(Springorum)에 의하면 피해자학적 관점은 특별한 범죄학적 관점으로서 유익하고, 특히 범죄원인론과 관련해서 소질과 환경이라는 구분에 의한다면 피해자학은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³⁸⁾ 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학은 원래 범죄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으로 지칭될 수 있다.³⁹⁾ 이러한 피해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펼쳐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학적 형법이론, 원상회복과 범죄자-피해자 화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그리고 피해자구조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형법이론의 관심은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이론의 구성에 쏠려 있었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응보론과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주력했던 전통 형법의 논의의 주제가 사회통합예방과 행위자-피해자 화해론으로 논의 중

36) 김성진,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158면.

37) H. J. Schneider, 『Kriminologie』, 1987, S.752. 여기에는 독일의 한스 폰 헤티히(Hans von Hentig)에 의해서 1948년에 출간된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저서가 범죄학이나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Hentig의 문제제기를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가설을 통해 해명하려고 시도한 Ellenberger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는 밝혀져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이 새로운 영역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범죄현상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고찰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범죄자·피해자의 관념은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원인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범죄원인에 주는 만큼의 관심을 피해원인에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성진, 앞의 논문, 159면).

38) Horst Schuler-Springorum, Über Victimologie, in: Festschrift für Richard Honig, 1970, S.203.

39) H. J. Schneider, a.a.O., S.752.

심이 변화되면서 형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⁴⁰⁾ 물론 전통적 형사사법에서도 피해자의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학의 문제제기와 피해자학의 연구성과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재발견은 형사정책적 논의에서 피해자의 기대와 이익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⁴¹⁾

이렇듯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은 범죄원인의 과학적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내지 공적 구제라는 차원에서도 논의되었다.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을 제정·실시한 이후 영연방국가들과 미국, 그리고 다른 유럽국가의 순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를 위한 입법화가 추진되었다.⁴²⁾ 미국에서는 1982년에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독일은 1986년 12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의 소송법상의 지위를 강화하였다.⁴³⁾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11월 28일 범죄피해자구조법, 199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한정되긴 하였지만 보다 전문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⁴⁴⁾

이와 같이 범죄학의 한 분과에 속해 있었던 피해자학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편중하였던 형사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분리 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이익과 권리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절차상의 권리신장 등 다양한 형사정책적 주제들에 대한 경험과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후원 역할을 하였다.⁴⁵⁾

40)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224면.

41) 그러나 형법이론 구성에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시도들은 피해자학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적지 않게 범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실 전통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의 규정들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공동 책임 있는 피해자의 행태를 책임결정이나 양형과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42) 김성진, 앞의 논문, 160-161면.

43) 김성진, 앞의 논문, 161면.

44) 김성돈, 앞의 논문, 108면.

45) 김성돈, 앞의 논문, 108면.

3. 회복적 사법의 관점

가. 회복적 사법의 등장배경

국가의 공형벌을 통한 전통적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갈등 해결수단으로 오랜 동안 존속되어 왔던 논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회복적 사법모델의 부활이 두드러진다. 그 배경으로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⁴⁶⁾

첫째, 형벌 효과에 대한 회의를 들 수 있다. 형벌의 응보적 성격은 점차 퇴색하는 대신, 범죄자의 치료·갱생·재사회화 등이 형사정책의 주요 목표로 부각된 것이다. 형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통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라는 가혹한 해악을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고, 구체적 행위정황 속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불가능한 근거에 기초한 책임비난을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범죄도 하나의 사회현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형벌은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징벌적 형사사법의 효율성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문으로부터 회복적 사법모델이 징벌적 형사사법을 대체 또는 보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캐나다의 소년사건 처형과정에서 처음 실험된 회복적 사법모델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얻어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속속 도입되기에 이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상황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현대 형사사법의 한계를 논함에 있어 형벌의 실효성과 목적적합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의 입장이다. 국가주도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국외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능력과 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징벌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욕구를 외면한 채, 국가의 법질서 내지 범공동체의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를 앞세워 가해자에 대한 해악부과만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법체제는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도 없지만, 가해자에게 전과

46) 김용세, 앞의 논문, 109-114면 참조.

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가해자의 보복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암수비율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⁴⁷⁾

셋째, 피해자보호운동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에 크게 발전한 피해자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피해자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운동 역시 초기에는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래에 북미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각종 피해자단체가 사회적 압력단체로 부각되면서 피해자운동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에 국외자로 취급되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형사절차 자체를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도 행해졌는데, 회복적 사법모델의 등장은 후자의 결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⁸⁾

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개념

심리학자 알버트에 글래시(Albert Eglash) 박사가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⁴⁹⁾ 사법모델을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사법,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기초를 둔 배분적 사법, 그리고 원상회복에 기초한 회복적 사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후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UN 비정부기구 동맹이 1995년 산하기구로 결성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실무단이 채택하고 있는 개념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

47)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한국형사법학회, 2003, 347-348면.

48) 김용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과 발전과정”, 앞의 논문, 114면.

49) Albert Eglash, “Creative Restitution--A Broader Meaning for an Old Term”,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ume 48, 1958, p.619에서 언급되었다가, 1977년에 발표된 ‘Beyond Restitution: Creative Restitution’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은 특정범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범죄의 결과 및 그것이 장래에 갖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⁵⁰⁾ 여기서 특정범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관계를 비롯하여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까지 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를 범죄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끌어 들임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은 종종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⁵¹⁾

이러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과거 전통적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법 및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나감으로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 사법이념이라 할 수 있다.⁵²⁾

회복적 사법이란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율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새로운 사법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이러한 회복적 사법은 국가의 무의미한 형사개입을 중지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해체된 범죄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회복(restoration)이란 피해자 또는 공동체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죄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피해자지원을 의미한다.⁵⁴⁾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규범합치적 행동양식을 회복시키고 다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촉구하는 특별예방으로서 역할을 한다. 더불어 회복적 사

50) 김혜정,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조』 제55권 제4호, 법조협회, 2006, 82면.

51) 이호중, “회복적 사법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9권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27면 이하 참조; 오경식,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교정연구』 (67), 한국교정학회, 2015, 51면.

52)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 도입”, 『경찰학연구』 제26호, 경찰대학, 2011, 92면.

53) 김혜정, 앞의 논문, 82-83면.

54)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앞의 논문, 347면.

법이 지향하는 회복은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공동체 질서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반 예방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⁵⁵⁾

회복적 사법을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재복원시키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⁵⁶⁾ 회복적 사법은 형벌의 부과와 집행 또는 손해배상명령과 강제 집행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대응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⁵⁷⁾ 이런 상황에서 회복적 사법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회복적 사법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연관성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에 비하면 매우 광범위하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이 ‘범죄자의 처벌과 사회복귀, 이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형사사법에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과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라는 가치까지 담고 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이 ‘범죄행위’에 초점을 둔 이론을 발전시킨 것과는 다르게, 회복적 사법 이론은 범죄로 인한 ‘피해’ 및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회복적 사법 이론가들이 말하는 피해 내지 피해회복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피해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주된 목적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대하여 야기한 피해까지도 회복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이 되는 낙인과 소외를 억제함으로써 적절히 제어하는 등 종래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이념으로 다루어졌던 과제도 범죄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 회복적

55) 김혜정, 앞의 논문, 83면.

56) 김용세/박광섭/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1면 참조.

57)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0면.

사법의 특징이 있다. 궁극적으로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피해의 회복은 ‘가해자 피해자 사회공동체의 유대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으며, 전통적인 형사사법에서 말하는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이라는 과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해회복이라는 목표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대화의 절차를 통하여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대화절차를 강조한다. 이러한 이념을 담아내는 절차 프로그램은 조정절차나 회합모델, 써클모델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절차프로그램들은 기존의 공식적인 형사절차와는 달리 갈등의 이해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⁵⁸⁾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범죄자와 피해자 등 관계당사자들이 범죄피해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피해회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전략적 중심은 피해자와 범죄자, 더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화해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절차에 있다.⁵⁹⁾

제3절 경찰과 범죄피해자

1. 형사사법에서 경찰의 역할

가. 형사사법에서 경찰작용

경찰이라는 용어는 ‘경계사찰’의 약어이다. 경찰의 개념은 본래 논리적·실질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제도적 개념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⁶⁰⁾

58) 조균석,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최근의 실무 동향”,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정성진박사 교회기념논문집, 2010, 388면.

59)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8면.

60) 경재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방향 제언 -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5, 160면.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경찰 개념의 역사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⁶¹⁾ 경찰의 원어인 police, Polizei 등은 고대 그리스어의 도시국가(폴리스)를 뜻하는 $\pi\omicron\lambda\iota\tau\iota\varsigma$ (polis)에서 파생한 $\pi\omicron\lambda\iota\tau\epsilon\iota\alpha$ (politeia)와 그것을 계승한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이고, 원래는 국정 전반 또는 국가의 체제(국체·국헌)를 뜻하였다. 14세기에 프랑스에서 ‘국가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la police라는 용어가 정립되면서 독일·영국 등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후 15-16세기에 경찰은 교회활동을 제외한 세속적 국가활동 전체를 뜻하였다. 따라서 경찰권은 시민의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공권력의 발동을 의미한다. 통일된 경찰권의 강화로 인해 근대통일국가(독일)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는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종래 국가활동 전체를 의미하던 경찰로부터 사법권이 독립하였다. 나아가 종래의 경찰개념에 포함되었던 외교·군사·재정 등의 경찰의 영역에서 분리되면서 독립되었다. 이로써 경찰의 역할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 행하여지는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개념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이에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경찰로써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절대군주체제가 정비되고 확립됨에 따라 내무행정에 관한 임무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찰의 이름으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경찰국가 시대가 도래하였다.⁶²⁾ 즉 17세기에는 사회목적적 행정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근대 국가의 출범과 함께 법치국가가 성립되었다. 이에 경찰의 개념도 소극적인 질서유지와 그것을 위한 위해방지를 위한 작용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소극적 경찰개념은 이미 18세기 말 프로이센 일반국법(ALR, 1794), 프랑스 경범죄처벌법전 (Code des delits et des peines, 1795) 등 각국의 입법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 후 잊혀졌다가,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기점으로 소극적 경찰개념이 부활되었고 이를 계기로 근대국가를 대표하는 경찰개념으로 확립되었다.⁶³⁾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나치스 치하에서 형해화되었던 소극적 경찰개념이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州에서 탈경찰화가 이루어져, 경찰은 일반경찰기관이 수행하는 위해방지(집행 경찰 내지 중

61) 최영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352-353면에서 인용.

62) 경제웅, 앞의 논문, 161면.

63) 최영규 앞의 논문, 352-353면.

래의 보안경찰)에 국한되고,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위해방지(종래의 협의의 행정경찰)는 질서행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이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경찰의 궁극목적이고, 위해방지는 경찰의 직접목적 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가 결합된 개념이다. ‘공공의 안녕’(öffentliche Sicherheit)이란 “한편으로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공공의 질서’(öffentliche Ordnung)란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표준적 설명이다.⁶⁵⁾ 법규범을 ‘공공의 질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해서 이견이 없다. 법규범이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의 질서’는 결국 공동체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풍속과 도덕’을 의미한다.⁶⁶⁾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위해를 방지하는 작용이다. 위해라 함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어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위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이미 교란된 상태를 의미하는 장애(Störung)와, 아직 현실적으로 교란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교란될 개연성이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위험(Gefahr)을 포괄한다. 따라서 위해방지는 장애의 제거(진압)와 위험의 방지(예방 및 제거)

64) 물론 이는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중심의 개념사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경찰이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police)은 기본적으로 경찰조직 내지 경찰력(police force)과 동의어이고, 경찰권(police power)이라고 할 때의 경찰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이해한다.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프랑스에서도 경찰의 개념은 “행정이 적절한 법적·물리적 조치들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며, 여기에서 ‘공공질서’는 원래 공공안전, 공공평온 및 공공위생을 내용을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공중도덕,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개인의 자기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경찰을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랑스에서는 탈경찰화를 알지 못한 채 경찰을 특정한 행정조직과는 무관한,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일정한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승민, “프랑스법상 경찰(행정) 개념”, 행정법 이론 실무학회 월례학술발표회, 2009 발표문에 대한 최영규, 앞의 논문, 354면 인용).

65) 최영규, 앞의 논문, 354-356면.

66) 최영규, 앞의 논문, 355-357면.

를 의미한다.⁶⁷⁾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⁶⁸⁾ 제2조 제7호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표현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예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찰의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는 다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 위험방지의 직무와 사후 진압적 성격을 갖는 범죄수사의 직무로 구분될 수 있다.⁶⁹⁾ 전자의 경우는 경찰법상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규명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제재에 제1차적 목적이 있다.

나. 사회변화와 경찰의 역할변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행정법에 관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종래의 경찰개념은 주로 경찰의 활동형태와 내용에 착안하여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⁷⁰⁾

종래의 경찰행정법학은 경찰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경찰의 자유제한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경찰의 본래의 임무가 어디까지나 개인을 ‘보호’ 하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종래의 경찰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경찰권발동이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 결과,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

67) 최영규, 앞의 논문, 357면.

6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69) 손재영,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5, 5면.

70) 서정범,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35-539면.

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작용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경찰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은 국민의 자유를 유지하는 법적 도구이므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경찰행정법학계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을 ‘공공의 안녕 내지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과 개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¹⁾

2.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의의

가. 범죄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피해자는 대체로 범죄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형사법상의 범죄발생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피해자의 개념은 하나의 형사사건 속의 범죄행위를 통해 한 개인이 해를 입은 것이라고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피해자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범죄행위의 존재,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의 존재, 한 개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⁷²⁾ 아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범죄의 개념, 범죄피해의 개념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학문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먼저 규범적인 범죄개념에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이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현행법상 어떤 법률적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을 말한다. 즉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유책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

71) 서정범, 앞의 논문, 539-540면.

72) 김재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형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131면.

어,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상의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실정형법을 초월하여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범죄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질적 범죄는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사회에 유해를 끼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본다. 따라서 실질적 범죄개념은 다른 말로 범죄학적 범죄개념이라고도 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어떤 행위는 처벌되고 또 다른 어떤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치국가질서 내에서 당벌성의 내용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지만, 그 한계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는 작업에 속하지만,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73) 제1호에서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범죄피해자

7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와 별도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인),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 제1항(긴급피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 범죄개념은 형사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의미가 있는데, 형사절차의 진행여부는 피해자 측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식적 범죄개념을 적용하기로 한다. 물론 형식적 범죄개념으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과 다소 거리가 있는 피해회복, 피해구조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경찰의 경찰권행사가 명확한 발동근거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⁷⁴⁾

(2) 범죄피해의 개념

범죄피해란 범죄로 인한 범익의 침해를 말한다. 범죄피해는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사회적 피해 등으로 분류된다. 신체적 피해는 주로 폭력범죄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치료나 재활을 시도해도 영구적인 외모손상이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피해는 재물손괴, 현금손실, 의료비용 지출, 결근 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방범장치설치 비용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피해액이 과도한 경우 평생 부채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이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정신적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는 것이며, 공포, 불면증, 정서마비, 대인기피 등이 있고,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 피해는 평소 즐기던 운동을 그만둔다든가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이 위축된다든가 하는 가벼운 것부터, 강도 침입 후 집을 옮긴다든가, 강간을 당한 뒤 이혼을 당하거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기피를 당하는 등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범죄피해회복의 대상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만을 고려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74)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10면.

고 할 수 있다.⁷⁵⁾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는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한다. 1차적 피해란 직접적인 피해로써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사기 또는 절도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등 발생한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 피해를 말한다.⁷⁶⁾ 2차적 피해란 범죄에 의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게 되는 정신적·물질적 손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감, 대인관계악화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 다양한 문제의 전반을 말한다.⁷⁷⁾

(3) 범죄피해자의 개념

피해자학이나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는 피해자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분류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념을 최협의로 이해하는 견해는 형식적 범죄개념에 입각하여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만을 가리킨다. 피해자의 개념을 협의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여 법률의 부재나 절차상 묵인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까지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피해자 개념을 광의로 보는 견해는 피해자를 범죄와 분리하여 그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람(예컨대, 침해당한 자의 가족)까지 피해자범위에 포함시켜 확장한다. 피해자를 최광의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피해를 범죄피해와 분리하여 유해성의 원인이 범죄가 아닌 민법상·행정법상 사건 등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확장한다.

현행법에서 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라는 용어는 헌법 제27조 제5항·제30조, 형사소송법 제95조·제223조·제294조의2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형사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피해자의 개념은 해당 법률 또는 법조문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느냐에 따라 각각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고소권자로서의 지위(제223조)를 부여

75) 최병호,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면.
 76) 양경규, “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03, 160면.
 77) 양경규, 앞의 논문, 160면.

하면서 별개의 조문(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으로 통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고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피해자란 ‘범죄행위(형식적 범죄개념)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은 피해자를 ‘그 법률에서 규율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범죄(형식적 범죄개념)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하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 그 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0조는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으로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 소결

피해자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법률의 목적에 따라 범죄, 범죄피해,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범죄의 개념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및 피해회복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식적 범죄개념의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지만, 범죄피해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갖추면 범죄로 보고 있다. 범죄피해의 범위는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형사소송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범죄피해자구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피해자의 구조와 배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특정범죄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피해를 당한 직접 당사자만을 규정(형사소송법)하기도 하고, 「범죄피해자구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피해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상속인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⁷⁸⁾

78) 최병호, 앞의 논문, 참조.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 범죄 피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형사절차참여를 위한 일정한 지위와 권리 보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형법상의 범죄, 범죄피해,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형사절차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보장을 위한 지위와 권리 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다소 거리가 있는 피해회복의 차원에서는 형법상의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을 정립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회복은 형사절차의 차원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범죄예방의 임무를 해태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보호대상으로서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한다. 지금껏 범죄피해자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가설적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피해자학에서는 전체로서의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폭넓게 범죄피해자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범죄학을 포함하여 전체 형사사법에서 피해자를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논제의 차이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개념적 구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⁷⁹⁾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즉 이미 발생한 범죄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실제적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⁸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로 인하여 직접 범익이 침해 또는 위협이 된 자연인과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⁸¹⁾

나.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1) 수사단서 제공자로서의 지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79)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앞의 논문, 53면.

80) 이용식,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94면.

81)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앞의 논문, 53면.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범죄의 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하며 피해자의 고소도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범죄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한다. 이러한 고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 하게하는 원인이 된다. 즉 고소인은 수사의 단서이자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데 그치는 경우인 범죄피해신고와는 구별된다.⁸²⁾

(2) 수사자료 및 증거 제공자로서의 지위

수사자료라 함은 범죄의 존재를 명백히 하고 범죄와 범인과의 결부를 추리·판단·단정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유형·무형의 증거가치 있는 자료, 그 밖에 수사활동에 도움이나 뒷받침이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이 수사자료는 소송절차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할 목적으로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지는 결과로서 직접 특정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증언 및 증거물)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범죄의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즉, 범인과 직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범인의 인상착의·말투·범행경위·범행방법·도주방법 등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수사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더불어 범인과 직접 접촉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8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를 한 경우 보통 민원실의 민원서류 접수대장에 등재절차를 거친 다음 수사과 조사계 등 주무부서로 고소사건이 인계된다. 고소사건을 인수한 조사부서에서는 고소보충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참고인 및 피의자 수사를 차례로 전개해 나가게 된다. 고소사건은 고소권의 유무·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경과 유무·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조건의 구비여부·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처리 하여야 한다. 또 사건을 완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기일을 연장할 경우 1개월 경과시마다 중간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단순한 피해신고만을 할 경우 수사에 착수한 담당자는 피해신고서를 제출케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통보표와 발생사건표도 함께 작성하게 되며 범죄현장이 있을 경우 현장에 입장하여 입장보고서와 실황조사서 등도 아울러 구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피해물품이 있으면 장물수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라도 범행현장에서 발견되는 비진술증거 등의 수집에 피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범인의 행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제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중요한 수사자료의 제공자인 피해자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사건해결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증거방법 중의 하나가 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있다.

(3) 신변보호 청구권자로서의 지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검사나 경찰서장의 판단을 통해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반면,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범죄신고자에게 신변안전조치 신청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신고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범죄신고자의 범위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신고자인 피해자는 당연히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신청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증인이 검사에

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은 신변보호 조치 청구권자를 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그 증인도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관계된 증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고 있다.⁸³⁾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판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을 청구하지 않는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근거로는 사용될 수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⁸⁴⁾

83)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6면.

84)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42면.

제3장 각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

제1절 영국

1. 피해자 보호·지원 관리권한의 지방이관

영국정부는 해당 지역의 피해자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지역 사회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의 관리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였다.⁸⁵⁾

특히 2012년 11월부터 ‘지방치안관리관(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PCC)’⁸⁶⁾ 제도가 신설되어 선출된 지방치안관리관이 지역 내의 치안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지방치안관리관이 지역의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탁 및 관리권한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지방치안관리관으로 이관되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지방치안관리

85)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관리권한은 대부분 지방치안관리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범죄의 경우 각 지역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전국 규모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성폭력지원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살인 피해유족, 법원 증인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을 실시하고, 일부 전국규모의 전화상담서비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지원에 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관련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186면).

86) 영국은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을 제정하여 시민이 선거를 통해 지방경찰청 운영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치정부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경찰청 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지방치안관리관이며,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이 허용된다. 지방치안관리관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전체 43개 지방경찰청 중 41개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치안관리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런던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의 경우 런던 시의회가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를 감독하고 별도로 런던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는 ‘경찰범죄대책실(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MOPAC)’을 설치하여 치안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김혁, 앞의 논문, 186면).

관이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⁸⁷⁾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치안관리관의 권한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 2004’ 및 ‘반사회적 행위 범죄와 경찰법(Anti - 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에 근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⁸⁸⁾

2.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

영국은 2013년 10월 ‘유럽연합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전의 피해자규칙을 대폭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규칙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 2004’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동규칙은 각 장별로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먼저 규정한 다음,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규칙은, ① 중대범죄의 피해자, ② 지속적 범죄의 피해자, ③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를 집중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강화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니즈평가(needs assessment)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범죄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러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⁸⁹⁾ 먼저, ‘중대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살인 등 범죄피해자의 유족, 가정폭력, 중요범죄, 테러, 성범죄, 인신매매, 살인미수, 유괴, 감금, 방화치상의 피해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속적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87) 김혁, 앞의 논문, 186면.

88)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 2004’ 제56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증인 또는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를 돕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지방치안관리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방치안관리관이 이를 운용한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 범죄와 경찰법 2014’ 제143조 제1항 b호는, “지역경찰기관은 피해자,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의 증인 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지방치안관리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인접한 지방치안관리관과 함께 지원서비스를 위탁할 수도 있다(김혁, 앞의 논문, 186면).

89) 김혁, 앞의 논문, 186면.

계속된 괴롭힘이나 스토킹 등으로 반복된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 시 18세 미만인 자 또는 정신질환, 지능·사회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된다.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또는 그 친족이나 관계자의 행위, 범죄의 내용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인종, 가정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증인보호팀 등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특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특별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⁹⁰⁾

3. 다기관 협력시스템

영국의 범죄피해자 정책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경찰·(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는 공동체적 대응기구인 N AVSS(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 Support Schemes)는 경찰에 요구되는 많은 업무량을 충족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민간부분의 지원단체가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⁹¹⁾ NAVSS의 목표는 각 범죄피해자, 목격자, 그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지원과 범죄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증진 등이다. 일정 직위 이상의 경찰간부가 지역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NAVSS는 경찰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혀 다른 기관·단체 참여자들과의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충격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⁹²⁾ NAVSS의 운영방침은 ① 서비스의 무료제공과 비밀을 보장한다. ② 범죄피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범죄피해자나 목격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③ 지원과정에서 인종, 나이, 성별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④

90) 김혁, 앞의 논문, 190면

91) Maguire, Mike, and Claire Corbett, “The Effects of Crime and the Work of Victims Support Schemes”, Aldershot, Hants, England: Gower, 1987, p.3.

92) 정지운,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29면.

타 기관과(경찰, 내무부, 보호관찰소, 검찰 등)과 협력한다. ⑤ 가해자의 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시는 금지된다. 범죄피해자와 직접관련이 되는 보상이나 보호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의 선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⑥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동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로 6가지로 규정되어 있다.⁹³⁾ 이 NAVSS는 1987년 공익 법인화되어 1989년 VS(Victim Suppor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니즈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증인보호팀 및 검찰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⁹⁴⁾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은 주로 민간단체인 ‘피해자 서포트(Victim Support)’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보는 사건 신고 후 2일 이내에 경찰에 의해 피해자 서포트로 자동 전송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인 차량 내 절도사건이나 자동차부정사용, 경미한 손괴, 자동차 절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서포트에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⁹⁵⁾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피해유족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 정보는 24시간 운영되는 사건처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게끔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 피해자 서포트는 보안메일을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⁶⁾

4.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영국에서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관련 정보제공에 대해서 경찰이 주도하여 수사단계뿐 아니라, 이후 소송 경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⁹⁷⁾

사건 발생 이후 수사의 개시 및 진행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93)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326면.

94)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15, para.1.1(Chapter 2 Part B).(김혁, 앞의 논문, 187면에서 재인용).

95) 김혁, 앞의 논문, 187면.

96) 김혁, 앞의 논문, 187면.

97) 공정식,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21면.

경찰이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등 일반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경찰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신고 내지 피해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리플렛이나 웹사이트 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경찰은 경찰유족연락관제도(Police Family Liaison)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유족에 대하여 사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유족연락관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으로 구성하게 된다. 경찰유족연락관의 경우, 평상시에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살인사건 등 범죄사건이 발생한 때에 경찰서장이나 담당 과장의 지시를 받아 유족에게 부검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⁸⁾

또한 피해자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사건과 관련한 개별정보의 경우에도 경찰이 제공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범죄를 신고하였을 때 서면 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경찰의 통지에 있어서 가정폭력과 같은 유형은 통지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체포, 신문, 석방, 경찰보석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집중 보호·지원을 요하는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⁹⁹⁾

제2절 미국

1.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과 조직

1982년 4월 레이건 정부가 임명한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조사위원회

98) McGarry D. & Smith K., “Police Family Lia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99) 김혁, 앞의 논문, 191면.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는 광범위한 조사연구의 결과로서 연방 헌법 수정6조의 개정을 포함한 68개항의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정책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높이고 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② 검사의 승인 하에 신속히 채증활동을 마치고 범죄피해자 재산을 환부해 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③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수사진행사항이나 종결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것, ④ 목격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으면 이를 수사의 최우선순위에 두어 수사를 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검사에게 통보할 것 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이나 각 주의 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규정과 함께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무 규정도입법해 놓고 있으며, 해당 주 경찰청에서는 지침형식으로 피해자보호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연방이나 주법 및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¹⁰⁰⁾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 NSA)와 전국경찰지휘관 모임인 ‘전국경찰총수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IACP) 및 경찰간부연구포럼 등 경찰관련 주요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고령자학대·위기개입 등 피해자 문제에 관해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¹⁰¹⁾ OVC도 IACP·NOVA(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¹⁰²⁾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달리 경찰조직 내에 아동학대·노인학대·여성 성범죄관련 피해자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분야에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갖는다.¹⁰³⁾

100)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p.18.

101) 강경래, "민간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14(2), 한국피해자학회, 2006, 9면.

102)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단체’(NOVA)는 미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는 전국적인 민간단체로서 피해자운동의 이환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103) 김재민, 『범죄피해자 대책론』, 진리탐구, 2006, 127면.

2.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과 검찰의 협력체계

기동성이 높고 범죄 피해자의 요청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고 있으나, 시·군·주 단위로 여러 모양의 경찰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각 조직이 각자의 아이디어로 피해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경찰에서는 협의된 피해자 지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¹⁰⁴⁾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의 특징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간의 연계와 협력을 들 수 있다.¹⁰⁵⁾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검찰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 Assistanc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검사실(District Attorney’s Office)에 설치된 ‘피해자-목격자 지원 계획’(VWAPs : Victim-Witness Assistance Projects)¹⁰⁶⁾과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¹⁰⁷⁾ 지방검사실, 각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에 등에 상주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을 통한 피해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피해자지원(Victim Assist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검사실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지원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 법률지원 제공, ② 지방검사실, 각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 등에 상주하는 피해자지원 전담요원을 통한 피해자대상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③ 피해자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연결, ④ 피해자의 수사 및 법정 절차에 동행 및 지원, ⑤ 증거로 쓰인 재산의 신속한 환부를 위한 조력, ⑥ 어린이·노인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 ⑦ 충격이 큰 범죄에 대한 현장 응급지원 제공, ⑧ 위협을

104) 권영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면.

105) 문정민/김운곤, “경찰 수사단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법학논총』 제1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89면.

106) ‘피해자-목격자지원계획’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조하는목격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07) Peggy M. Tobolowsky, 『Understanding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2000, p.252.

받은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동행 및 신변보호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LAPD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 절차를 우리나라와는 달리, 엄격한 규칙으로 정해 놓고 매뉴얼화하여 모든 경찰관이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는 ① 신고접수 및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② 관계인 전원의 진술 청취 ③ 가능한 경우 가해자 검거 및 필요시 피해자에 치료수단 제공, ④ 검거 불가능시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긴급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⑤ 수사보고서 작성(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죄(misde meanor)혐의로 시(市)의 검사에게, 중할 경우 중죄(felony)의 혐의로 지방 검사에게 제출), ⑥ 검사는 수사보고서를 보고 범의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¹⁰⁸⁾

제3절 독일

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직과 운영

독일에서 피해자 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 주의 법무성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 경찰도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의 범죄연구소에서는 1976년부터 피해자학 연구 분야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다양한 피해자문제를 다루어 옴으로써 독일 피해자보호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¹⁰⁹⁾

독일 경찰활동의 피해자 보호대책은 범죄예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범죄 예방은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민간단체, 교육부분, 경제사회, 매스미디어, 개별시민까지 책임져야하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과제로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¹¹⁰⁾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찰은 연방의 법무·여성·소년·가족·교육·과학 및 보건부 등 피해

108) 정지운, 앞의 연구보고서, 42면.

109) 권영만, 앞의 논문, 17면.

110) 박주상, “수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제13집,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5, 218면.

자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보호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해의 대상자, 주체 등으로 기관 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나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간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 하에서 내무성은 민간단체와 경찰을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녀의 집’이나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110번’의 설립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연방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범죄피해자 안내서(Oper Fibel)’를 발간한다. 범죄신고, 경찰과 검찰의 책무, 증인의 의무와 권리 및 피해보상 등 정보를 수록하였다.

경찰서 내 범죄예방팀 소속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은 2~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별 인력구조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경정이나 경감이 피해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필요시 인력의 상호과건 및 교류가 부처를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되는¹¹¹⁾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내용

독일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경찰의 주도적인 업무로 보는 반면, 피해자지원은 본질적으로 경찰이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도움이라 본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에게 양도되어야 할 성질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지원을 하는 것은 범죄 또는 사고현장에서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위험상황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경찰은 다른 피해지원 기관이나 민간단체들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¹¹²⁾

경찰과의 현장에서의 피해자 접촉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피해자로서 이해할 것, ② 범죄를 통하여 야기된 피해와 악영향을 방지 내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③ 사건처리 등 경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범행현장에서 우

111) 정지운, 앞의 연구보고서, 51면.

112)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19(3), 2012, 참고.

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심과 감정이익을 통하여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신속하게 판단하여 개개인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도움을 줄 것, ⑤ 상담을 통하여 다른 전문적인 피해자지원 전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적절하게 안내하고 연계시켜 볼 것, ⑥ 이후의 경찰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개과정이나 제도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것, ⑦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보호법 등에 의한 사건처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법률적 수단을 고지하고 피해자 보상법 등 피해자지원 관련법규의 내용을 안내할 것, ⑧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⑨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회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¹¹³⁾

독일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경찰의 피해자보호로써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¹¹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피해자보호법(OpferSchG 1986), 조직범죄대책법(OrgKG 1992), 증인보호법(ZSchG, 1998), 증인보호조화법(ZSHG 2001) 등이 있다.¹¹⁵⁾ 이 외에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¹¹⁶⁾ 이들 법률 중 앞의 피해자보호법, 조직범죄방지법 및 증인보호법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증인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001년 12월에 제정된 증인보호조화법(ZSHG)은 형사절차 외에서의 증인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¹¹⁷⁾ 실질적인 증인보호는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경찰에 의한 증인보호제도인 ‘함부르크 모델’은 증인보호와 관련된 가장 체계화 된 프로그램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서 ‘함부르크 모델’은 예컨대, 담당 수사기관과의 협의, 증인 및 가족과의 상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113) 김재민, 앞의 책, 139~140면.

114) K.Rebmann, Der Schutz des gefährdeten Zeugen im Strafverfahren Möglichkeiten de lege lata, Erfordernisse de lege ferenda, NJW 1989, S.1185 ff.

115) 장규원,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참조.

116) K.Roxin/B.Schünemann, 『Strafverfahrensrecht』, 27.Aufl., C.H.Beck München 2012, S.212.

117) 박광민/강석구,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92면.

개인적 차원의 보호제공(주거지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호나 순찰 등), 직장알선 및 이사, 주거제공, 직접적인 개인보호(예, 법정에서의 경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¹⁸⁾

제4절 일본

1.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직과 운영

2015년 9월에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종합조정 등에 관한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가행정조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여 내각부로부터 각 성(省) 등(각 성과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청 및 소비자청)에 일부의 사무가 이관되어(각 성 등에 종합조정권한이 부여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내각부의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실(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의 사무는 국가공안위원회에 이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가 정부 전체의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閣議) 결정된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사무에 관하여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 정령(政令) 지정도시에 대하여 사무실시를 행하는 지위가 된다.¹¹⁹⁾

국가 공안위원회의 범죄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오늘날 경찰의 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 지원 요강(2011)’에 의해 수행된다. 이 지원요강은 1996년 대책요강에 이어서 발표된 경찰청차장의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경찰 및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공통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존중, ②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이해, ③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지원을 제공, ④ 범죄의 빠른 완화, ⑤ 지원자들의 선제적인 개입, ⑥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절한 설명, ⑦ 부수적인 피해 예방, ⑧ 프라이버시 보호, ⑨ 피해자 안전확보, ⑩ 지원자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 ⑪ 원활한 지원, ⑫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

118) 장규원, 앞의 논문, 1131면.

119) 田村正博,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현황과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5권 제4호, 경찰대학, 2015, 272면.

와 경찰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다.¹²⁰⁾

2.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의 내용

일본 경찰은 범죄발생 후 최초로 피해자에 접하게 되고 현장조치, 사건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나 분노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능한 가장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 상황의 해소·회복 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은 먼저 피해자의 기본과 욕구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화를 도모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추진되고 있다.¹²¹⁾

경찰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기본대책과 부분대책으로 나뉜다.¹²²⁾ 기본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피해자 안내서” 및 수사정보 제공), 상담과 카운슬링 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상제도, 수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담 완화,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포함된다. 살인, 상해, 성범죄 등으로 인해 신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수사관이 아닌 경찰관이 피해자보호시스템에 의해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한다.¹²³⁾ 피해자 보호에는 다양한 원조가 제공되는데 병원예약과 치료를 위한 에스코트, 현장조사를 위한 안내, 안전귀가, 걱정거리에 대한 상담(개인적인 문제 포함), 피해자 안내서 제공,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 가족, 학교, 상사에 대한 설명과 연락,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외부 상담자에 대한 위탁 및 이양 등이 있다. 총 경찰관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33,000명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되었다.¹²⁴⁾

반면 부분대책에서는 피해특성에 따른 경찰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 청소년 피해자, 고의적인 사건에 의한 피해자, 범죄조직과 관련된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복잡한 연애감정에 의해 유발된 강력사건 피해자 등에

120) 田村正博, 앞의 논문, 269면.

121) 권영만, 앞의 논문, 20면.

122) 田村正博, 앞의 논문, 270면.

123) 田村正博, 앞의 논문, 270면.

124) 田村正博, 앞의 논문, 270면.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예컨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센터 설립,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피해자 진술청취나 증거수집 및 접수, 병원 에스코트, 그리고 수사정보의 제공 등), 증거수집에 물건과 옷이 필요할 경우 옷을 갈아입기 위한 준비 등이 포함된다.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증명비, 초진비, 검진비 및 긴급피임비 제공에 공적자금을 활용한다.¹²⁵⁾

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도도부현 경찰은 형사절차의 개요, 수사에 대한 협력 요청,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각종 상담기관·창구에 대해 알기 쉽게 기재한 팸플릿 ‘피해자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다.¹²⁶⁾ 경찰청의 ‘피해자 가이드’를 참고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 사건 절차, 그리고 경찰 및 관계기관·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망라하여 「피해자 가이드」와 팸플릿을 작성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조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 가이드’에는 원칙적으로 살인과 상해, 성범죄 등 신체범 피해자, 뺑소니사건과 교통사망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은 수사관이 배포하는데, 그때 「피해자 가이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²⁷⁾

그리고 수사에 대한 지장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수사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피해자 연락제도’인데, 피해자연락 책임자 및 피해자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연락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연락이 확실하게 행해지도록 조치한다. 이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피의자를 검거한 장소·피의자의 성명·연령·기소 및 불기소 등의 처분결과·기소된 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이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신고 접수 후 약 2개월, 뺑소니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약 3주 후에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행하도록 하고 있

125) 권영만, 앞의 논문, 20면; 田村正博, 앞의 논문, 270면.

126) ‘피해자 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절차의 개요와 수사에 대한 협력 요청, 피해자에 대한 지원요원 제도 형사절차, 수사상황의 정보에 관한 제도, 재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전확보에 관한 제도, 경제적 지원과 각종 지원·복지제도, 정신적 피해자의 지원, 각종 상담기관·창구.

127) 川出敏裕, “犯罪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 『現代刑事法』 No10, 2002, 17~19頁.

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피해상담은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¹²⁸⁾

나. 피해자 상담 및 카운슬링

중대사건의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심리상담자를 배치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와 민간상담자를 연결하기도 한다. 특히 1989년부터는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용전화(#9110)를 설치하고 전화에 의한 종합적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성범죄피해·소년문제·악질상법범죄에 의한 피해·폭력단에 의한 범죄교통사고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등이다.¹²⁹⁾

일본경찰은 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전국의 경찰서에 응접세트를 비치하고 조명과 인테리어를 개선한 ‘피해자용 조사실’을 정비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자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출입하는 것 자체에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하여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사나 현장검증을 행할 수 있는 이동용 피해자 조사실인 ‘피해자 지원용 차량’을 도입하여 범죄피해자의 상담과 신고 수리,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시설, 호텔, 대학 등 경찰시설 외의 상담회장을 임차하고 있다.

다. 범죄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보호

(1)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성별의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경찰본부의 성범죄 수사지도계나 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담당부서에는 여성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수사에 임하도록 해오고 있다. 특히 도

128) 早川智之, “警察における被害資連絡制度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52卷11号, 2000, 4~8頁.

129) 김재민, 앞의 책, 146면.

도부현 경찰본부에 ‘성범죄수사지도관’ 및 ‘성범죄수사 지도계’를 설치해서 성범죄 수사의 지도·조정을 하고 있다.¹³⁰⁾ 그리고 지방경찰청은 성범죄수사 지도계와 경찰서 성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여자경찰관의 배치를 추진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수사에 임하는 성범죄 수사관으로서 여자경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여성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조사를 비롯하여 증거채취, 증거품의 수령, 병원에서의 동행, 수사상황의 연락 등 성범죄 피해자가 관련되는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¹³¹⁾ 이러한 여성수사관들의 주요 임무로는 피해자로부터의 사정청취, 증거채취, 증거품의 수령, 병원 진료의 보조, 수사상황의 연락 등이다.

(2) 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가 소년일 경우에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각 경찰서에 피해소년의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상담이나 면접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때 면접 장소는 ‘소년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타인의 접촉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며, 상담 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년보호도업무담당자인 직원을 통하여, 또는 유관기관에 인계가 필요하면 유관기관에 각각 인계하여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해소년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 경찰은 소년보호 경찰관을 핵심으로 하는 소년문제 전문조직인 ‘소년 지원 센터’를 모든 지방경찰청에 설치하여 보다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타격을 입은 소년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호자와 협조하여 소년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가정을 포함한 주위환경을 조정해 주고 적절한 지도나 조언, 카운슬링을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 서포트 센터’가 전국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되어 소년 보도 직원이나 소년 상담 전문직원을 중심으로 피해소년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도록

130) 安田貴彦, “警察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対策”, 『警察學論集』 56卷1号, 2003, 44-69頁.

131) 박병식,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강화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2014, 60면에 의하면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성범죄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조사를 하는 성범죄 지정수사관으로 지정된 여성경찰관은 전국의 지방경찰청에서 6,712명이었으며, 지방경찰의 성범죄수사지도계 담당자는 297명으로, 그 중 여성경찰관은 147명이었다.

록 경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며, 경찰시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용 출입구와 전용상담실을 설치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방경찰청 소재지 및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하며, 피해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소년의 일어서기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나 아동상담소 등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나타낸다.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191개소에 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 그 중 64개소는 소년과 보호자가 가볍게 들 수 있도록 경찰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¹³²⁾

(3) 악질 상법범죄 피해자의 보호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상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연과 지도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본부에 ‘악질상법범죄 피해신고 110번’ 등의 전용 상담전화나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비자행정 담당 부서나 소비자생활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제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수사 활동에 반영하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의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¹³³⁾

(4)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

교통사고로 인해서 종래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근래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제도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건담당 수사관이 수사상황, 검거상황, 처분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 따라서는 그 통보대상을 중상자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한다.¹³⁴⁾ 또한 과학적인 수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대하고 악질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

132) 박병식, 앞의 연구보고서, 66면.
 133) 정지운, 앞의 연구보고서, 65면.
 134) 정지운, 앞의 연구보고서, 65면.

사고 사건수사 통괄관(統括官) 및 교통사고 감식관이 현장에 임하여 객관적인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지휘하고, 교통사고 수사관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수사체제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5) 스토킹과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 상담을 위한 필요한 능력의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호명령과 일시보호 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지도경고를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스토킹 사건의 발생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의식개혁과 조직에 의한 정확한 대응의 철저를 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위험성과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지원절차의 도입, 체포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기재할 때 피해자 사항의 표기방법의 배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행위자의 특이동향 파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와의 연계 강화 등 피해의 확대 및 재피해의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¹³⁵⁾

135) 박병식, 앞의 연구보고서, 65면.

제4장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제1절 경찰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인권향유에 있어서는 그 향유의 주체는 모든 인간으로서 차별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인권규정은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그 효력의 보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승인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토대가 된다. 인류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유하려면 인권존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국가의 실정법적 승인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초실정법적, 전국가적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곧 국가가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후단). 따라서 중요한 국가의 법집행기관 중의 하나인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를 둔 당위적 과제인 것이다.

종래에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수사 및 심리의 객체로 취급을 한 나머지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협조자로만 인식을 해왔고 그들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범죄피해자에게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상응하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기 위하여 미비한 관계 법률을 보완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격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 특히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집행 의식과 태도를 갖출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¹³⁶⁾

2.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 증대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적정절차의 원리 및 신속한 재판의 원리의 제약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치안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범죄 신고와 참고인진술과 같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된다.¹³⁷⁾ 경찰이 범죄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 및 이를 목격한 증인, 그리고 각종 증거물 등을 통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¹³⁸⁾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나 범인을 밝혀낼 수 없게 된다.¹³⁹⁾

국가가 전담하는 형벌 체계가 확립된 전통적인 형사사법 하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온전히 국가가 부담하며, 따라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벌을 과하는 국가와 이를 부담하는 범죄자의 대칭적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형사소송의 주체도 국가기관과 피고인·피의자에게 국한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증거수단이나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세심한 절차적 배려를 생략한 채 오로지 범죄피해자를 단순한 증거방법중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효율적 수사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사법정책의 운영을 되돌아 봤을 때 그 실질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겠다.¹⁴⁰⁾

136) 김재민, “경찰피해자 수사에 있어서의 제도적 수사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6호, 경찰대학, 2004, 16면.

137) 송병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 2015, 24면.

138) 정우성/김순석, “경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3),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252면.

139) 김순석, “경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26면.

140) 김순석, 앞의 논문, 26면.

따라서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서도 범죄피해자의 진술하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로의 진술증거 확보방법으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cognitive interview)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수사기법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범죄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rapport)이다. 범죄피해자 수사에 있어서는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얻어진 신뢰관계 속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운데 진술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성과 진실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¹⁴¹⁾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은 범죄피해자를 수사절차에 있어서 단순한 객체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당사자이자 주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의 범죄피해자의 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2차 범죄피해화 예방

2차 범죄피해자화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반응에 의해 겪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과정을 의미한다. 이미 1차적 범죄의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2차 범죄피해자화로 인한 정신적 쇼크와 신체의 부조가 발생하여 의료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실직, 전직 등에 따른 경제적 빈곤,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으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부담 역시 2차적 피해의 대표적인 과정이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무책임한 소문과 언론보도에 따른 불쾌감, 이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친구와의 인간관계 악화되고 이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이 2차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¹⁴²⁾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객체로 인식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게도 인격권 또는

141) 김재민, 앞의 논문, 17면.

142) 광대경/신재현,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186면.

사생활의 비밀침해와 같은 원치 않는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는 심리적인 불안상태에서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 범죄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추궁, 떠올리기 싫은 피해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는 질문, 보기 싫은 범죄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제2차 피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¹⁴³⁾. 또한 범죄를 신고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이나 경찰관계자의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따른 피해 외에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¹⁴⁴⁾

또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피해자화는 1차 범죄피해로 인해 형사사법제도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경제활동 시간의 지출로 인한 임금손실은 물론 불필요한 교통비 및 기타 서류작성에 의한 잡비의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인 피해를 비롯하여, 형사절차 참여로 인한 개인시간 소비 및 주변인과의 관계·인식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발생시키는 것이다.¹⁴⁵⁾

4. 범죄피해자 기대에 부응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사건에 대한 변명을 들어주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 또한 피해자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족하고자 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민감하여 경찰의 대응여부에 따라 정신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⁶⁾ 경찰은 비록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를 접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당사자들의 기대나 요구를 받아주어야 한다.

본래 범죄피해자의 보호나 피해의 경감과 같은 범죄피해자의 요구는 경찰에 있

143) 송병호, 앞의 논문, 24면.

144) 김순석, 앞의 논문, 27면.

145) 광대경/신재현, 앞의 논문, 186면.

146) 이희선, “경찰의 정신지체장애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어 단순한 서비스로만 인식하면 부족하며, 본래의 역할이라고 인식되어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나 기대에 응해야만 할 것이다.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욕구를 무시한 채 오직 수사만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를 상대한다면, 결국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¹⁴⁷⁾

제2절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1.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피해와 특성

가. 강력범죄

강력범죄라는 용어는 실정법상 또는 이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범죄의 개념 또는 범주와 관련, 학자들이나 형사사법기관이 분류하는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살인·강도·강간·방화를 중심으로 강력범죄의 범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이들 범죄 외에 폭행·상해·공갈·협박·약취·유인·체포·감금죄와 특별법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범까지 강력범죄에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의 분류에 따르면, 폭력을 요소로 하지 않는 방화범죄가 강력범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검찰의 경우, 강력범죄를 폭력범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¹⁴⁸⁾

범죄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발적인 외상이나 자연재앙보다 더 병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죽음의 노출과 연관되면 특히 병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사건이후 어떤 충격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충격적인 강력범죄 사건일 발생하게 되면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건 전 평온했던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겪지 않을 상황을 겪게 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방문, 사건 및 수사관련 정보

147) 김순석, 앞의 논문, 27면.

148) 박행렬,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53면.

습득을 위한 담당형사와의 실랑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의 잦은 만남,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변명에 맞서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고통으로 인해 쉽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거나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는 거의 모든 사건의 진상과 가해자에 대해 관심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제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 특히 아이가 살해된 경우, 그 아이의 부모는 정신적으로나 복합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¹⁴⁹⁾

강력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면,¹⁵⁰⁾ 먼저 1차 피해로 신체피해, 정신적·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1차 피해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피해는 물론, 신체피해로 인한 2차적 증상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사회관계나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력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도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된다.¹⁵¹⁾ 특히 여성피해자 보다 남성피해자의 경우, 모욕감과 자아상실감이 초래되거나, 때로는 증오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남성피해자는 여성피해자에 비해 강한 분노와 복수심을 보이기도 한다. 가해자에 대하여 적개심

149) 공정식, “강력범죄 사건이후 피해자들의 욕구와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9권 제2호. 대한범죄학회, 2015, 105면.

150)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화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범죄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1차 피해자화라고 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건 후의 일상생활에서 다시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151) 김지선/김성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2021년)의 방향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23면.

을 보이고, 때로는 피해자 자신이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무기력감은 스스로를 수동적이고 부정적 자아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2) 2차 피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의 발생이 빈번하고 그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먼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반복조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 범인인 듯 취급하거나 취조하는 듯한 태도, 원치 않는 합의권유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범죄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당하는 2차 피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특히 반복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반복조사의 과정에서 취조하는 듯한 태도나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는 무례한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¹⁵²⁾

또한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들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 이후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과 마주칠 두려움을 갖는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실제로 가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을 위해 접근하기도 하고, 또는 양형단계에서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기도 한다. 범죄피해 이후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보복범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신고자, 증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데, 대체로 원범죄에서의 피해자가 보복범죄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의 원범죄 유형은 상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폭행, 업무방해, 성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¹⁵³⁾

152) 김지선/김성언, 앞의 보고서, 231면.

153) 박한호,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의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14, 26면.

강력범죄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응당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즉 정당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가해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사건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이렇다보니, 피해자는 수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⁵⁴⁾

나. 성폭력 범죄

(1) 외상 증후군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 폭력범죄에 비해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두려움·불안·공포·우울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통제감이 상실되는 등, 심리적인 영향에 많은 미치게 된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즉 대인 기피증·남성공포증 등을 겪게 되어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충격과 분노, 악몽이 되풀이 되는 등을 경험하면서 외상 증후군(Trauma Syndrome)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⁵⁵⁾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이후,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보다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보인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약 30%는 자해하는 신체반응을 보이고, 그 밖에도 불감증, 마약이나 의존성 알코올중독 등의 부작용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 여성의 경우에는 자괴감, 죄책감,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빠지기 쉽고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무망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자는 성장하여 우울증,

154) 김태경/윤경희, “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5면.

155) 허선주/조은경,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381면.

마약 등의 약물복용,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강한 피해여성은 물론이고 아동피해자의 경우, 성장한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정신증, 충동장애, 불안증, 대인기피증, 성격·인격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소위 ‘나영이 사건’과 같이 정신적인 발병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평생을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등이 있어, 사건의 심각성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¹⁵⁶⁾

(2) 2차 피해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형사사법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와 피고소인인 가해자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곧바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에게서 상해흔과 같은 강제적 성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렇듯 성폭력피해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의구심을 품은 형사사법기관의 태도는 이미 직접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유발시킨다.¹⁵⁷⁾

즉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1차적인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 사후 처리과정에서 2차적 피해와 3차 피해가 나타난다. 주된 견해로 정리하자면, 1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말한다. 사건발생 이후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에 의해 간접적으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3차 피해는 앞선 피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의 부재로 인

156) 공정식, 앞의 논문, 107면.

157) 허선주/조은경, 앞의 논문, 382면.

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복된 조사를 하는 등 잘못된 법체계 또는 관행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편향적인 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조사방법 및 태도라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수사관들의 태도 및 질문방식, 비속어 및 저속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조사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느끼게 된다.¹⁵⁸⁾

다.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이란 가정구성원간의 갈등양상으로 발생하여 배우자, 자녀, 형제, 동거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학대 등의 폭력성을 띠어 국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¹⁵⁹⁾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어느 폭력의 피해자가 그러하듯,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한다. 즉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때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한 번 형성된 이 마음은 전문적인 심리치료 개입 없이는 사망할 때까지 평생 그 사람이 자신과 외부 현실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본질적인 마음구조의 변화 없이는 가정폭력이 또다시 되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특수 상황은 폭력에 연루되는 부부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인 자녀들 역시 심리적, 정신적 악영향을 받게 만든다.¹⁶⁰⁾

158) 김용근,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08면.

159) 오세연/박원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사례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11, 100면.

160) 여은경,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문제 해결방안”, 『아동가족치료연구』 제8집, 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센터, 2010, 29면.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가정폭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7,359건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다소 감소한 6,84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다시 8,762건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16,785건이었고, 2014년에도 17,557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폭 증가하여 40,822건으로 가정폭력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¹⁶¹⁾ 한편 가정폭력 사범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구속되는 수는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불구속 처리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2011년 51명, 2012년 73명, 2013년 262명, 2014년 250명 그리고 2015년 606명으로 구속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조치는 아직 법제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비된 점을 감안 할 때 불구속 상태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할 경우 피해자가 살인 등의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라. 재산범죄

재산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구제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절차상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범죄피해규모의 경미성, 피해자와 가해자와 인적관계, 또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²⁾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행동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와 같이 범죄피해가 심각할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나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아는 경우에는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합리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¹⁶³⁾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의 배상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금품을 반환받게 되면 피해자의 보복감정과 증오심은 완화되고 용서하는 감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배상과 화해는 피해자의 경제

161) 경찰청, 「경찰백서」, 2016, 127면.

162) 탁종연,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 21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4면.

163) 탁종연, 앞의 논문, 70면.

적 손실을 회복하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심리적 외상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¹⁶⁴⁾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의 문제점

범죄로부터 재산피해 외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면서부터 그 고통이 완화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확대·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2차 피해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반복된 피해를 입게 된다. 그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배려 부족이나 미숙한 업무처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고통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범죄피해자들은 재차 동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여 사회생활이 위축되게 된다. 또한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음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볼 경우, 국가나 법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듯 자기 처벌적 생활방식으로 인해 자신의 존엄성이나 사회인으로서 존재를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제3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지나치게 잦은 소환이나 긴 시간의 조사, 부적절한 조사환경과 부족한 인력,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 내용 등의 수사과정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한 실망하고 절망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⁶⁵⁾ 아래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각 범죄 유형별로 설명한다.

가. 강력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초기에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164) 김용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과 발전과정”, 앞의 논문, 106면.

165)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66면.

장애(PTSD) 등 항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구대와 경찰서를 옮겨 다니며 장시간 조사하거나 병원진료, 상담기관 인계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즉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진술이 범인검거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한 범죄피해자를 형사들이 경쟁적으로 접촉, 중복된 질문 반복,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기에 범죄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반복 출석요구 등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권위적·우월적인 수사관행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범인검거를 우선시 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⁶⁶⁾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으며 때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동기를 의심받기도 한다. 또한 수사경찰이 증거를 찾아 조사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경우에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죄 발생 후 증거채취 및 치료와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번거로움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범죄의 증거채취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피해자는 몇 군데의 병원을 찾아 돌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나 상담은 자신의 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필요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조사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교육 정도에 따라 그 고통은 배가될 수 있다. 범죄자체로 인한 피해와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하고 범죄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¹⁶⁷⁾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주위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일단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성폭력범

166) 이봉환, “제도 내외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호, 경찰대학, 2006, 125면.

167) 권순민, 앞의 논문, 477면.

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게 되고 대체로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상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성요건에 적절하게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범죄피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많은 범죄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밝히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찰도 자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극히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⁸⁾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빈번한 소환절차, 중복질문 또는 지나친 조사과정,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한다거나 가해자의 사정여부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유발을 의심하는 질문, 피해자의 반항 정도와 구조요청, 강간치상사건의 상해에 관한 질문, 지나친 비속어의 사용 등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합의를 종용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사에 대한 무관심이나 사소하게 다루어 물증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여

168)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수사상 문제점이 보수적인 법원의 판단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표현되는 최협박의 폭행, 협박과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를 넘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은 피해자인 여성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민감한 부분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다. 즉 피해자가 악착같이 반항을 했는지 여부와 강간이 기수가 될 때까지의 신체의 생리적 변화과정 및 당시 정황에 대한 질문들을 피해 여성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강간피해자를 수사할 때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옷차림이나 음주여부 또는 성경험 등의 사항에 대해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반대라고 보겠다. 특히 면식범에 의한 강간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폭행, 협박의 정도 및 반항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피해여성을 수사경찰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강간죄를 해석하는 법원의 견해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만일 법원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해석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면 족하다고 해석한다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이상의 조사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황정익, 앞의 논문, 421면).

버리거나 가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그리고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서의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사례, 더 나아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났다.¹⁶⁹⁾

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즉 초기대응 단계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형사법적 개입에 대한 긍정적 내지 부정적 첫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향후 법적 개입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초동조치만으로도 가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수사기관의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여 경찰이 철수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적 행위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¹⁷⁰⁾ 그런데 가정폭력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경찰대응 방식을 개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고 돌아가는 경우나,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지속적인 폭력에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강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¹⁷¹⁾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의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라고 볼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가정폭력 가해자를 불구속처리 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의 근절을 이룰 수 없고, 피해자가 제2차 피해에 노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169) 김용근, 앞의 논문, 107면.

170) 윤형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한국경찰학회, 2004, 94면.

171) 김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329면.

처벌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적 제도의 한계와 함께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 경찰과 타 기관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¹⁷²⁾

현재 한국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현행법의 제도 규정의 한계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가정의 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중요한 근거법은 「가정폭력특별법」 제5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제5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발동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제5조의 보호조치 규정과 위험방지 규정은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경찰관 발동의 구체적인 조치 유형과 경찰관의 행사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폭력 개입 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특별법」 제5조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의 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가정폭력 제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¹⁷³⁾

라.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은 사기와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대응과정에 있어서, 강력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고소·고발과 진정 등 민원에 의한 사기범죄는 대부분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특정하지 못한 채 주로 법률상 기소여부만 판단하여 송치하여 온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재산범죄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 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활동에서 미흡한 면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¹⁷⁴⁾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관련 신뢰도가 미신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피해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까닭으로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높지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피해 미신고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신뢰도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⁵⁾

172) 오세연/박원배, 앞의 논문, 99면.

173) 오세연/박원배, 앞의 논문, 121면.

174) 정웅,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6, 78면.

전반적인 재산범죄의 증가 추세 속에 경찰은 악성사기 사건을 비롯한 주요 재산 범죄의 경우 전담팀 운영과 추적수사, 기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피해 규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¹⁷⁶⁾ 억제에 위하여 민사성격의 수사민원에 대한 ‘팀장상담 후 반려제도’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고소·고발사건은 총 68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¹⁷⁷⁾ 그러나 일선 경찰서 고소·고발 사건 등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사건의 경우에는 접수 규모에 비해 검찰처분 단계에서 매우 낮은 기소율을 보여¹⁷⁸⁾ 경제팀 수사역량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피해회복과 지원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3. 수사과정에서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보호의 개별화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특징은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에 대한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와 관련되어 보여주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는 개별 범죄마다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도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태도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⁷⁹⁾ 특히 범죄피해자를 수사의 편의를 위한 객체로 대하면 피해자는 더욱 더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수사의 목적에 너무 치우쳐서 범죄피해자의 권

175) 탁종연, 앞의 논문, 68면.

176) 심희기,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59면 이하 참조.

177)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참조.

178) 2016년 고소·고발사건의 기소율은 213%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발을 제외한 대다수 고소사건 57만여 건의 기소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179) 박상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2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1, 138면.

리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강력범죄피해 직후에 두려움이나 공포에 압도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는 회피반응의 일부로 외부 활동을 꺼리거나 아예 침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정서적 지지와 함께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여전히 현장 출동자와 수사경찰관이지만,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 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¹⁸⁰⁾

그리고 강력범죄 발생이후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와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¹⁸¹⁾

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수사절차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공통된 방안은 가해자와의 대면 또는 대질신문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조용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제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때 수사관 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문 수사관 및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격권을 침해하는 질문을 삼가고, 가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성폭력 전담 수사기관 및 전문가 참여제도의 도입 및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의무적·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창함과 동시에, 반복적이고 잦은 조사 및 소환 등을 지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수사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적절한 원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더욱 확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180) 김태경/윤경희, 앞의 논문, 36면.

181) 공정식, 앞의 논문, 144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¹⁸²⁾

(1) 수사관의 인권의식 변화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경찰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이다.

수사관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수사진행과정에서 외부적으로 표명되는 객관적인 자료이외에, 범죄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심리상태, 성폭력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성폭력 시간과 장소 등 제반사항을 편견 없이 고려해야 한다.¹⁸³⁾

(2) 성폭력 범죄 수사의 개선

성폭력 범죄의 사건현장에서 경찰의 활동은 보통은 다른 사건현장과 같이 순찰차나 제복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성범죄에서처럼 순찰차가 자택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사복을 입고 일반차량으로 출동하여 범죄 피해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범죄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먼저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이 먼저본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성범죄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능한 한 주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범인을 검거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자택 등에 대한 실

182) 허선주/조은경, 앞의 논문, 392면.

183) 김학신,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8, 61면.

황조사나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입회해야 할 경우에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기억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피해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또는 매직밀러를 이용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범인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¹⁸⁴⁾

(3) 조사방법과 조사환경 개선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 발생에 대한 신고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경찰에서의 수사와 검찰의 확인수사,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똑같은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그 고통이 배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잦은 소환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고, 같은 조사의 반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소환 전에 신문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⁸⁵⁾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위해서 여러 차례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신문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반복된 진술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화실 운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에는 대부분 독립된 조사실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무실 내에 따로 독립된 조사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독립된 조사실을 통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 각 팀별 칸막이를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시간의 단축과 조사실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 시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범죄자 식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참고

184) 김학신, 앞의 연구보고서, 62~63면.

185)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8면.

인 조사는 수사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¹⁸⁶⁾

(4) 성폭력전담 수사제도 도입

수사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경험의 부족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정신적·심리적 피해 및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특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¹⁸⁷⁾ 현재 경찰의 여성경찰 기동수사반이나 검찰의 가정 폭력 전담검사제는 매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효율적인 대처하기엔 무리수가 있다.

경찰에서는 전국에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두고 있으나 여성조사관 수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정황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더구나 동성이 아닌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한 심경을 보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더욱 늘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에 따른 여성전담조사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2차 피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담조사관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 소정의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¹⁸⁸⁾

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1) 실효성 있는 초기대응 능력의 제고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경찰의 초기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⁸⁹⁾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피해자가 대부분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친절한 자세로 신속·정확하게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전화신고 접수 시는 정확한 발생장소(주

186) 김용근, 앞의 논문, 110면.

187) 임병락,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방안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92면.

188) 신주호, 앞의 논문, 31면.

189) 윤형관, 앞의 논문, 98면.

소)를 확인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 경찰이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피해사실, 응급차나 다른 조력이 필요한지, 가해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지, 곧바로 폭력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음주여부, 어린이가 같이 있는지 여부 등과 범행의 수단·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등 관련사항 또한 파악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계급·성명 및 가정폭력범죄 수사활동의 개시를 고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상태와 가택내부를 확인한 후에 폭력이 진행 중 또는 직후라고 판단될 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강제원리에 입각하여 가택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가정사 개입이라고 항의할 때에는 위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경찰관 현장입장 시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하는데, 이때 가족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제지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를 원할 경우 현장에 머무르며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현장에 있는지 여부, 각목·칼 등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현장 조사 시에 조치사항은 분리조사 및 범죄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체포 및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해야 한다. 현장조사경찰관은 향후 사건처리과정과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우려 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소·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희망할 때에는 상담소 등에 인도하고, ONE-STOP지원센터와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⁰⁾

190) 오세연/박원배, 앞의 논문, 102-105면.

(2) 임시조치의 실질화 및 실효성 확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스스로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¹⁹¹⁾ 즉 현행법에서 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긴박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경찰관에게는 임시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현장에서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불가능하여 사건 개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임시조치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임시조치권을 설명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노출의 수치심이나 아이들의 문제로 임시조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격리조치 등을 할 수 없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더라도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폭력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적극적인 제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 격리, 접근 금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가정폭력 폭력 발생 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권을 부여하게 하는 등의 현행법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가정폭력을 재방지하는 효율성을 가져오게 하여야한다.¹⁹²⁾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라는 점과 그 사이의 아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건화 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건화

19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92) 오세연/박원배, 앞의 논문, 121면.

되지 않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주변인 확인서, NGO 확인서 등 간략한 서류 첨부 등으로 경찰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가능한 법제도가 요구되며, 임시조치의 요청대상자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뿐 아니라 미신고 피해자도 포함시켜 진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¹⁹³⁾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경찰관이 실효성있게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후 가해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규정 외에 형사처벌을 할 근거규정이 없어 또 다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제지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긴급임시조치가 가해자에 억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⁹⁴⁾

라. 재산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

최근 들어 이른바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보호·지원 활동 가운데서도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지원 이외에도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과 회복적 수사 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94) 박봉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단계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법학』 제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1면.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품을 찾아주는 것이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수사과정을 포함한 범집행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물품에 대해서 취득과정에 대해 증언 또는 서면의 형식을 통해 알려주면서 신속하게 환부해 줄 것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피해품을 회수하길 바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 피해품 회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경찰은 피해품 회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품 회수를 위해서는 관련한 규정의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동수사 시 효과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위해 방지 또는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¹⁹⁵⁾

특히 재산범죄의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범인을 검거, 처벌하거나 손실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재산범죄 수사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수사단계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1. 서설

수사절차는 보통 형사절차의 처음 단계로서 수사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단계를 거쳐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하여,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사절차의 초점은 주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맞추어져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여부 확인과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해 행하는 활동이라고 수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⁶⁾

피해자의 침해 내용과 적절한 보호방안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사절차를

195) 박호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0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10면.

196) 권순민, 앞의 논문, 464면.

분설하면 다음과 같은 국면을 범죄피해자는 각각 마주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¹⁹⁷⁾ ①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②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는 등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다. ③ 또한 범죄현장을 보존하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한다. ④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⑤ 피의자 검거나 그의 유죄확정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를 경찰에 소환하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 ⑥ 피의자를 확보한 경우 범인식별이나 진술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 ⑦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증거방법으로 의미 있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다(압수).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비교적 수사의 초기단계인 ①·②(또는 ③)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이다. 이 단계에서 신속한 출동과 증거보존, 적절한 치료와 신변안전조치 그리고 향후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는 ④·⑤·⑥·⑦에서는 범죄피해자 조사나 피의자 대질 신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가 문제가 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점으로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의식 결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비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또 다른 피해를 중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범인식별절차에서 일면식 없는 환경에서 범인을 식별케 하거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케 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조사시 피의자 조사실과는 다른 대기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특히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에서 장물에 대한 압수는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한다. 범죄피해자는 압수된 물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돌려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지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¹⁹⁸⁾

197) 권순민, 앞의 논문, 464-466면 참조.

198) 권순민, 앞의 논문, 464-466면 참조.

2. 경찰 피해자수사의 정의와 유형

가. 피해자수사의 정의

(1) 수사의 개념

수사(investigation, Ermittlun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최광의, 광의, 협의의 수사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최광의의 수사개념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한 모두 수사활동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협의의 수사개념은 오로지 수사활동을 수사절차에만 국한시켜 정의하는 입장으로서 수사란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이라고 보는 견해로,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를 수사의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는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광의의 수사개념은 최광의 수사개념 중 입건 전의 활동을 제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이 입건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¹⁹⁹⁾ 이러한 광의의 수사개념이 일반적이며 범죄피해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수사활동에 있어서 부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비수사기관의 행위일 경우에는 수사활동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 부수적 수사활동에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이 포함된다.²⁰⁰⁾

그러므로 인질강도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뿐 만아니라, 인질을 구출해내는 과정도 수사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 수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범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와 피해를 당한 자를 구호하고 상담시설에 인도하는 활동도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같은 이유로 성폭력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범인이 이미 도주한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수사활동 지원행위는 수사에 협력하는 행위일 뿐 그

199)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185면.

200)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148면.

행위 자체가 수사에 속할 수 없다고 보는데, 예컨대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행위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예컨대 수사경찰이 예방순찰을 위한 야간 방법활동에 동원되거나 행사장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 수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해자수사에 대한 정의

피해자수사는 수사유형 중 하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러 유형의 수사기법을 혼용·활용하거나 각종 수사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의 피해자수사라 함은 ‘경찰수사기관이 발생된 범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탐지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더불어 어떤 범죄의 수사과정에 필요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회복을 돕고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사경찰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²⁰¹⁾

나. 피해자수사의 유형

경찰의 피해자수사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경찰 피해자수사의 유형을 구분할 때 사건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와 계속수사로 나눈다는 견해가 있다.²⁰²⁾ 이 견해에 의하면 초동수사는 사건발생 초기에 현장출동·현장임장·현장보존·현장관찰·현장감식·수사 긴급배치 등의 형태로 전개된다. 즉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의 신속한 현장조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 중에는 사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사건 현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²⁰³⁾ 이 때에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등을 활용하여 정밀분석을 거쳐 수사의

201) 김재민, 앞의 논문, 152면.

202) 김재민, 앞의 논문, 145면.

203)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에 절도사건, 강도사건, 공갈사건의 경우는 초동수사가 필요하지만 사기사건,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동수사를 전개할 여지가 없다.

방향을 설정한 뒤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초동수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라도 현장조치가 종료된 후라면 이 경우에도 역시 수집된 증거나 수사자료 등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분석·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범인의 신원확인, 범인검거, 증거수집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초동수사 이후에 전개되는 이러한 수사활동 유형을 ‘계속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해자 수사를 초동수사와 계속수사로 구분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방법을 그 대상만 범죄피해자로 하여 구분하는 것보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한 수사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수사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사유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즉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건발생 직후 현장조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 혹은 계속수사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강제력행사 유무에 따라 강제수사 혹은 임의수사 방법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피해자수사에 어떠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탐문수사 등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법들을 이용하여 수사를 전개할 수 있다.²⁰⁴⁾

3.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수사

가. 초동수사

(1) 초동수사의 개념

초동수사란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중심의 수사 활동을 말한다. 초동수사는 현장성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현장성’이 있다함은 ‘범죄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의 3대원칙중 하나인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이 초동수사와 관련이 있다.²⁰⁵⁾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이 먼

204) 임병락, 앞의 논문, 133-135면; 김재민, 앞의 논문, 145면.

205) 박호정, 앞의 논문, 2-3면.

곳으로 도주하여 수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건발생 초기에 신속히 현장에 입장하는 형태로 개시되는 초동수사는 최근의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되어가기 때문에 범인검거는 물론 증거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²⁰⁶⁾

초동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은 피해자의 진술 확보·피해품 내역 확인, 피해자 신원확인(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등에 그치고 마는 것이 그동안의 수사방향이였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충실히 할 것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형사사범의 새로운 흐름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 보호적 측면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이 초동수사 진행과정 중 범죄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① 정확한 신고접수와 신속한 현장출동, ②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의 피해자의 구호조치, ③ 범인이 현장에 있을 때 피해자 구출 혹은 격리를 위한 위기 개입 등을 들 수 있다.²⁰⁷⁾

(2) 신고접수

최초 신고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⁰⁸⁾ 피해자는 신고당시 공포스럽고 당황한 상태이거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받아 의지할 곳은 유일하게 경찰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 스스로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필요한 내용을 간결히 청취하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²⁰⁹⁾

(3) 현장출동

사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이 범죄현장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느냐와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피해자 구호가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

206) 김재민, 앞의 논문, 145면.

207) 김재민, 앞의 논문, 152면.

208) 박호정, 앞의 논문, 2면.

209) 강희창,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5면.

다고 볼 수 있다. 신고와 경찰의 현장 도착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즉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도착하여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상 중이거나 심리적으로 충격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은 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범죄로 인해 충격 속에 빠져 있는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의 처음 경찰과 마주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위협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²¹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근무복보다는 사복착용이 요한다. 또한 출동 시에는 순찰차보다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12 지령실과 수사 지휘 간부는 지구대와 출동형사들에게 출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인명을 경시 하는 듯한 태도는 금물이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현장은 가능한 한 원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통해 피해사실 청취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여 단호하면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범죄신고자나 목격자에 대한 보복, 인질강도 및 약취 유인, 가정폭력등의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더욱 더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²¹¹⁾

(4) 피해자 구호활동

범죄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경찰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범죄수사규칙」 제83조 등을 근거로 하는 수사경찰의 임무이다. 범인이 도주하여 추격해야 하는 경우라도 경찰관은 임무를 분담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를 하도록 한다(「범죄수사규칙」 제83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

210) 권순민, 앞의 논문, 472면.

211) 경찰청, 「범죄피해자 매뉴얼」, 2015, 24면.

키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및 제반 정황에 관해 질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관의 입장에만 서지 말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0조).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는 실무의 매뉴얼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자를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거나 의료기관에 수용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

(5) 위기상황에의 개입²¹²⁾

다양한 위기 중에서 범죄는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한 상황적 위기의 하나로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이 다른 위기에 비해 크다고 보고 있다.²¹³⁾ 특히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목격자에 비해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건현장에서의 대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범죄에 있어 위기개입은 사건현장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심리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지원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개입의 특징을 한번 더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위기개입을 통한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이 추후의 수사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경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²¹⁴⁾

212)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중반 보스턴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생존한 자가 겪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을 통해 Lindemann과 Capan정신과 의사가 개념화하였고, 1950~60년대 동료들과 함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확대되었다. Ewing은 위기개입을 위기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이며, 이러한 이론을 교육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위기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한다. Hafen과 Peterson은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Puryear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백일홍/박호현, 앞의 논문, 10면).

213) Bloch, Ellin L. 「Crisis intervention and trauma response: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p.16.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적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 했을 때에는, ①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②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③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또 이러한 위험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7조는 위험한 사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기적인 상황을 말한다. 동법 제5조의 경우 ‘공작물의 손괴·교통사고·위험물의 폭발·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의 경우와 동법 제7조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는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경찰이 출동하여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들은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이 발생한 직후의 현장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위기개입형 초동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다.²¹⁵⁾

최근에 범죄신고자나 목격자에 대한 보복 위협의 증가, 인질강도 및 약취유인사범의 빈번한 발생, 가정폭력사범의 증가와 같은 제반 현상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²¹⁶⁾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현장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단순한 강·절도범이 인질강도로 변하거나 가정폭력사범이 현장에서 방화를 감행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살상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들이다.²¹⁷⁾

214) 백일홍/박호현, 앞의 논문, 10면.

215) 김재민, 앞의 논문, 155면.

216) 김재민, 앞의 논문, 155면.

217) 김재민, 앞의 논문, 155면.

(6) 현장증거 수집활동

초동수사의 경우 사건발생 직후 현장에 진출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현장에 유류된 증거물을 수집하여 감식을 의뢰하는 등 증거수집활동을 전개한다. 이때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활동은 탐문수사 형태, 참고인(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형태, 최면수사 등의 형태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에, 특히 범죄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²¹⁸⁾

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의 문제점

(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

현장에 입장하는 경찰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피해자를 대면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계속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자세로 긴급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가 사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외부 도움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²¹⁹⁾

범죄현장에 초동조치에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장 초동조치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관과 관련이 있다.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는 사람은 지역경찰관인 경우가 많다. 지역경찰관은 자신의 경력 중 대부분을 지구대에서 보내고 있는데,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법규와 매뉴얼,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이나 상급부서에 가거나 보수를 더 받는다는 등의 이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한 경찰조직은 현장중심의 인력운영 보다는 상급부서중심의 조직운영을 하고 있어 상급부서가 승진, 보수, 보직, 처우에서 우대받는 현실에서 지역경찰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근무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낮은 상황이고, 현장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승진, 보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동적인 경찰관을 만들어

218) 김재민, 앞의 논문, 157-158면.

219)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p.46.

내는 악순환이 이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찰의 현실은 바로 국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이에 뒤따르는 최근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예방론으로써의 형사정책의 주요 목적인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²²⁰⁾

(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은 112신고를 통해 긴급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112신고는 절박하고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범죄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112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초동조치와 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고체계의 운영방법인 112범죄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²²¹⁾

(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

범죄의 피해자는 신고 당시 매우 흥분하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 신고 접수 시,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라고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여야 한다. 간혹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는데도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고 선불리 판단하여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초동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점

초동수사에서 피해자를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객체로만 인식한다면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방법, 면담시간, 면담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회복을 할

220) 박호정, 앞의 논문, 7면.

221) 박호정, 앞의 논문, 7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²²²⁾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04년 9월부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초동수사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도 경찰관들에게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활동보다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상담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²²³⁾

(5) 현장출동시 대응방안의 문제점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여 피해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찰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로 만들어 대비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절도나 단순강도사건 등 단순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범죄에서 시작되었다가, 경우에 따라 인질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질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4. 부수적 수사

부수적 수사라 함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장중심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경찰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 활동으로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One Stop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경찰활동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관, 임시숙소 제공, 개인정보의 변경, 위치 알리미를 통한 긴급연락망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에서 신변보호와 One Stop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2) 박호정, 앞의 논문, 7면.

223) 박호정, 앞의 논문, 7면.

가. 신변보호조치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시각을 다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처와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중요하다.²²⁴⁾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해자의 무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도 여전히 범인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범인 등에 의한 보복의 위협은 범죄피해자로서는 범죄 신고를 망설이게 하고 범죄신고 이후 수사 절차나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만든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를 제2, 제3의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는 그 후 여전히 보복에 대한 위협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재범발생이나 보복범죄는 가정폭력 사건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일어나기도 있고 가해자나 그 가족 또는 소속집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²²⁵⁾

(1) 신변안전조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중 가장 직접적인 보호조치로서,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와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는 당사자들의 신청뿐만 아니라 재판장 또는 판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서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혹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없이 신변보호를 신청하

224) 백일홍/장규원/박호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247면.

225) 권순민, 앞의 논문, 474면.

는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안내에 따라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변보호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내지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신변안전조치 이행에 있어 경찰서장이 규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에 대한 통보서류와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청훈령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범죄의 신고 등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또한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에 있어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다(동규칙 제2항).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종류²²⁶⁾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범정의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순찰 및 CCTV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인 조치로서 특정 장소에 대한 경호와 인적 조치로서 특정인의 신체에 대한 경호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위해서 경찰관이 현장출동 시,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리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 앞에서의 체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²²⁷⁾ 피해자서포터²²⁸⁾는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

2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2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현장출동 시 유의사항)

-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 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

에 대해 신변안전조치로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즉 범죄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 신고자와 그의 가족 등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²²⁹⁾

범죄의 방법, 동기,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피해 방지자를 지정하고 그 피해자 근처의 경찰서를 재 피해방지 조치 지정경찰서로 정하도록 하며 그 경찰서의 경찰관 중에서 재 피해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은 지도경고, 신변경계, 순찰, 피해자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의 형집행 종료일, 가석방일시, 수용행형시설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체방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피해 우려를 강하게 느끼는 피해자의 경우 방법벨 등의 기기를 대여하거나 피해자 집에 자동긴급통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²³⁰⁾

(2) 피해자 관련 정보보호

이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정보의 유출을 막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여기서 피해자의 정보라 함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며, 이 외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신원관리카드 및 형사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통한 증인 소환 및 신문에 있어 신원확인을 하는데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 또는 임의적

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체포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한다.

③ 경찰관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8) 피해자서포터는 수사부서와 지구대 각 팀별로 1명씩 10년이상 근무한 배태량 경찰들 중 선정되어 강력사건 및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 등 일정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103-121면 참고).

229) 김성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6-57면.

230) 권순민, 앞의 논문, 476면.

인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²³¹⁾

나. One Stop 서비스

우리경찰은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병원과 경찰관서를 전전하며 또 다른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던 여성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소, 본격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상담지원과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을 통한 법률지원 등이 통합된 입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 여성피해자 및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24시간 무료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담회와 관련부처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ONE-STOP지원센터 전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28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²³²⁾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진료후 범죄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함으로써 이중조사와 수치심 유발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과 상담실을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설치하였다. 그 외에도 법률구조공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 등에 적극 참여하므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피해자 조사

가.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전속되어 있는 이상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

231) 백일홍/장규원/박호현, 앞의 논문, 241면.

232) 경찰청, 「경찰백서」, 2016, 109면.

에서 참고인의 신분에 불과하게 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질문 태도와 방식, 범죄피해자가 조사받는 곳의 환경, 반복된 소환 요구와 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이 2차 피해를 야기한다.²³³⁾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진술을 강요할 수 없으며(「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18조),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17조),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²³⁴⁾ 또 참고인진술을 받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피해자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²³⁵⁾

(1) 출석요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는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조사한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범죄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경찰관서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사정 등을 말한다.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함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활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화·FAX·인편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양식을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참고인출석요구서 발부상황을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의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소재수사 기록과 함께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²³⁶⁾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잦은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

233) 권순민, 앞의 논문, 479면.

234) 김재민, 앞의 논문, 162-163면.

235) 김재민, 앞의 논문, 162면.

236) 김재민, 앞의 논문, 165면.

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시간을 예약을 받는 등 계획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르지 말고, 가급적 출장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여건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조사방법이 필요하다.²³⁷⁾

(2) 피해자 진술조서의 작성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였을 때나 현장 증거가 빈약할 때, 피해자수사를 통해서 범죄해결적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피해자수사는 다각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수사시에 착안해야 할 점들을 열거해 보면, ①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항인 성장관계, ②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적, ③ 피해자의 친우관계, ④ 피해자의 남녀관계, ⑤ 피해자의 가족관계, ⑥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나 원한이 있었던지 여부, ⑦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관계, ⑧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예를 들어 재산총액, 부동산 명의여부, 금융기관 거래관계, 신용카드회사 상대 신용카드 발급상황 등), ⑨ 계모임 관계, ⑩ 피해자의 직장관련 대인관계, ⑪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 등이 있다.

진술조서의 작성을 통한 피해자수사는 증거수집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반면 여러모로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명예감정, 그리고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하고 조석 작성에 있어서 소극적 차원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16조, 제18조,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0조), 경찰은 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형사절차진행이나 피해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당사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로와 동정심을 갖는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방식 또한 강압적이거나 피해자에게 따져 묻는 듯한 질문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성경험 전력이나 직업, 평소 평판에 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 피해가 결국 피해자의 책임에서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237) 김재민, 앞의 논문, 165면.

듯한 질문 방식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수사기관 더 나아가 사법기관을 불신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피해자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제2차 피해, 3차 피해라는 피해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²³⁸⁾

나. 피해자 면담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면담’이란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련된 사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청취하는 대화과정을 말한다.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접촉하여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조사의 넓은 의미 속에는 면담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조사는 진술조서 작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면담은 피해상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경찰서의 조사실 보다는 피해자의 집이나 범죄현장에서 가벼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범죄수사규칙」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피해자 면담 시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개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이 면담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진술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피해자면담은 수사기관과 피해자 상호 교감·친밀감 형성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효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의 독특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섬세하게 위로하고 동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사경찰관의 수사행태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진실 되고 정확한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²³⁹⁾

238) 권순민, 앞의 논문, 480면.

239) 김재민, 앞의 논문, 167면.

제5장 경찰의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제1절 경찰의 미래지향적 역할변화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경찰의 수사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범죄통제적 또는 법집행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 경향이였다. 즉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인체포 및 증거수집을 통한 성공적인 기소와 처벌에 총체적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원상회복을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로 보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²⁴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입은 여러 형태의 손실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²⁴¹⁾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하에서 경찰 수사활동의 이상적인 모습은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공정하게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각종 보호조치와 지원조치를 충분하게 수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활동이 범죄자를 향한 수동적인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보호도 함께 아우르는 적극적인 법집행작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차원의 경찰수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외연을 확대하여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경찰관의 의식이나 행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알맞게

240) 강희창, 앞의 논문, 14면.

241) 김재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130면.

변화하여야 한다.

2. 가해자 중심 사법에서 균형적 사법으로의 변화

경찰을 비롯한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입안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절차 관련 법률을 포함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들은 전시행정과 다를 바 없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행 소송법체계 아래에서의 경찰수사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범죄피해자보호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⁴²⁾

그러므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오직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만을 생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외를 가져오게 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체계에서 하나의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경찰을 비롯한 검찰, 법원, 교정기관 사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아무리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경찰관 개개인이 얼마나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범죄피해자를 대하는 담당수사관의 행태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은 물론이며, 담당수사관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를 객관적인 수치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의 운용과 함께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²⁴³⁾

242) 박행렬,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430면.

243) 박행렬, 앞의 논문, 430면.

3. 경찰의 임무영역의 확대논의

‘피해’ 또는 ‘피해자’의 개념은 그것이 범죄적 원인에 시작된 것이든 비범죄적 원인에 따른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즉,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보호대상은 자살, 실종, 재난 등 ‘경찰상 위험상태로 인한 피해자’까지 포함하고 있다.²⁴⁴⁾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피해자의 개념을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찰대상 피해자와 국가적인 보호·지원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피해 또는 피해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경찰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피해의 개념 확장과 경찰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²⁴⁵⁾ 첫째, 복지사회와 국가기능의 확대를 지향하는 현대적 국가관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의 근원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지형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피해의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범죄행위와 비범죄 행위지만 유해한 행위의 경우 그 구별이 다소 인위적이며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원인을 불문하고 피해의 본질은 동일하며 그로인한 고통은 국가 내지 경찰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경찰이 고통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경찰의 존재가치와 더불어 인권의 가치와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와 피해자의 범주를 급격히 확대되어질 수 있고, 경찰의 업무영역이 기타 사회복지 영역과 중첩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경찰업무의 정체성이나 독자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범죄피해 특유의 속성에 적합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²⁴⁶⁾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경찰에게 각종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본적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²⁴⁷⁾ 더구나 2015년부터

244) 장석현, “경찰의 피해자보호 여건과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15. 32-35면.

245) 장석현, 앞의 논문, 32-35면.

246) 김용세, 「피해자학(제4판)」, 형설출판사, 2010, 7면.

247) 장석현, 앞의 논문, 34-35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범죄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차츰 점진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첫 단계로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경찰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추후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개념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차원으로 피해자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 개선방안

수사경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으려면 제반 수사환경의 개선은 물론,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 수사경찰이 ‘수동적 범집행자’나 ‘범죄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오늘날 수사경찰에게는 ‘문제해결자’ 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태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²⁴⁸⁾

이것은 시민과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형성, 즉 교감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다. 수사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해당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이나 조사과정 중 불친절한 태도,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수사행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태개선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경찰관으로서 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는 일이라 본다.²⁴⁹⁾

가. 선입견·고정관념의 배제

수사경찰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외모나 상황에 따른 선입견이나 고정관

248) 조만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6-90면.

249) 김종욱, 앞의 논문, 243면.

념을 버려야 한다. 강력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²⁵⁰⁾ 행위적 고정관념에 관한 예에 따르면, 출동하는 경찰관은 통상 범죄현장에서 급히 도주하는 자를 모두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이때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러한 전형적 고정관념 때문에 범인을 검거 못 하거나 잘못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되거나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진행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²⁵¹⁾

이러한 제2차 피해자화 현상은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경찰관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릇된 ‘피해자 신화’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이다. 즉, “폭행당한 부녀자는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기를 원한다, 남자라면 매력적인 여성에게 이끌리기 마련이어서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순순히 응했다면 이것은 강간이 아니다, 여성은 은근히 얻어맞는 것을 즐긴다, 가정 내에서의 폭행은 사랑싸움이다, 오직 저소득층에서만 가정폭력이 존재한다” 등과 같은 것들이다.²⁵²⁾

이와 같은 제2차적 피해자화예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의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사례 등을 많이 발굴하여 그 해악성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²⁵³⁾

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교육 실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43.75%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에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현행법상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의 한계보다는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을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 등의 강력범죄와는 달리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도

250) 김종욱, 앞의 논문, 243면.

251) 김종욱, 앞의 논문, 244면.

252) 김종욱, 앞의 논문, 244-245면.

253)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243면; 김종욱, 앞의 논문, 245면.

시급하겠지만 가정폭력을 일반사건과 같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 사회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기관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화 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신입경찰관들에게는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경험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법적취지를 알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경찰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때 사건의 현장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함께 법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정기적인 교육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경찰관의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²⁵⁴⁾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행태의 개선방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현장에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취하는 각각의 행동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 중에 건내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위로해주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따라서 수사경찰관이 바람직한 수사행태를 갖추도록 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사경찰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건 당사자(피의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의사소통기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감수성과 감정이입능력, 그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²⁵⁵⁾

이를 위해서는 수사현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경찰의 행태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하여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사경찰관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고 바람직

254) 오세훈/박원배, 앞의 논문, 125면.

255) 김종욱, 앞의 논문, 249-250면.

한 행태를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²⁵⁶⁾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수사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사행태에 대한 기본지침의 개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체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사경찰관들은 이를 철저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⁵⁷⁾

가. 초동수사 행태의 구체적 개선 방향

(1) 신고접수 행태의 개선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²⁵⁸⁾ 더불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가해자의 흥기소지여부,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공범여부와 같은 현장상황 및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보도 사전에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²⁵⁹⁾

이를 위하여 112 신고접수요원의 전문화와 112 신고 접수 메뉴얼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직업경찰관이 순환근무 형태로 112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순환근무에 불과하여 경찰관의 전문적인 신고접수가 어렵다는 문제를 낳고 있어, 이는 112신고 접수요원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화된 112 시스템의 신고접수요원은 관내 지리와 지형 및 지물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신고에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112신고가 가능한 여러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112신고요원에게 교육과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에 의한 전문성을 강화할

256) 임병락, 앞의 논문, 125-128면; 김종욱, 앞의 논문, 249-250면.

257) 김종욱, 앞의 논문, 249-250면.

258) 정우성/김순석, 앞의 논문, 261-262면.

259) 박호정, 앞의 논문, 9면.

수가 있어야 한다. 112 접수요원의 전문성 강화는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가져와 범죄피해자예방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²⁶⁰⁾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의 대응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만족도(victim satisfaction)를 결정하는 변수로 경찰대응의 신속성(expectation of response time), 현장출동 경찰관의 조사노력(investigative effort), 경찰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작용하고 피해자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은 범죄피해자의 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¹⁾ 범죄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수사경찰관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출동시간이 피해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하였을 경우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100%인 것과 대비하여 경찰관의 출동시간이 피해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느리거나 같은 때에는 만족도가 느린 경우는 22%이고 같은 경우는 63%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²⁶²⁾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피해자들이 무엇보다도 범죄신고 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을 경찰에게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고 출동의 신속성은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²⁶³⁾ 범죄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를 한 경우,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것을 요하므로 경찰은 항상 출동태세를 갖추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요구된다.²⁶⁴⁾ 이와 같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경찰은 자기 관내의 지리와 특성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초동조치 대응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범죄신고자는 신고 당시, 공포 속에서 당황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허위신고나 그릇된 신고여부를 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신고를 허위신고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중대한 사건 신고를 경미한 신고로 잘못 인식하여 빠른 대처가 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⁵⁾

260) 박호정, 앞의 논문, 9면.

261)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9, pp.109-115; 박호정, 앞의 논문, 9면.

262) 박호정, 앞의 논문, 9면.

263) 박호정, 앞의 논문, 9면.

264)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265)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254면.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²⁶⁶⁾ 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²⁶⁷⁾

(2) 현장출동 행태의 개선

사건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는 경찰이 범죄현장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느냐와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피해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지에 달려 있다.²⁶⁸⁾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은 사건발생 전에 발생 가능한 사건유형별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더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사건발생시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출동이 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²⁶⁹⁾ 사건현장의 상황에 따라 경찰임을 노출하고 출동하는 방법과, 은밀하게 출동하는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사건유형에 맞는 출동방법을 선택하여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장과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신중하지 못한 출동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현장대응훈련이 요구되며 현재 형식적인 훈련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훈련방식과 훈련에 따른 결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다양한 길 찾기 평가를 개발하여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⁷⁰⁾

(3) 지역경찰관의 개선방안

경찰의 기본임무는 검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이나 지리안내와 홍보 및 피해자보

266) 정우성/김순석, 앞의 논문, 262면.

267) 정우성/김순석, 앞의 논문, 262면.

268)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437면;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269)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270)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호 등 주민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경찰관의 근무성적이나 외근성적은 물론 성과에만 중심을 둔 평가라던지 관서평가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근무성적 중 기여도 평가란에 범인검거위주로 평가지표가 작성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화하여 범죄피해자예방이나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 자체의 인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을 인사제도에서 우대할 수 있는 진정한 현장중심의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관이 서류에 둘러싸인 채 탁상공무로만 남겨지지 않고, 제대로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²⁷¹⁾

유능한 직원과 무능한 직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현재 수사권 독립을 위해 도입된 수사경과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경과제를 실시한 후 수사경과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경찰관들은 소외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같은 조직 내에서 두 개의 다른 집단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찰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소외감은 확대된다. 유능한 수관은 대부분 수사경과로 편입되어 지역경찰이 맡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범죄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따라서 수사경과제 폐지를 통한 수사경찰과 지역경찰의 적절한 배분과 순환근무는 경찰 내 갈등해소 및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지역경찰의 자질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⁷²⁾

(4) 초동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개선방안

피해자 서포터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서 내에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은 어떤 종류의 사건현장이든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면접기법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언어나 행동 및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동수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배려수사가 이루어

271)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272) 박호정, 앞의 논문, 10면.

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훈련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화법구사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에게 사건현장 출동 시에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에 좀 더 원활한 수사방향에 일조하기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언행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²⁷³⁾

(5) 위기개입 훈련의 실시

수사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범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위기관리 및 위기개입 훈련을 통하여 치밀하게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경찰관에게는 범인과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진입을 해야 할 것인지 부터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때 수사경찰이 범인을 자극하게 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피해자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질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유의하여 매뉴얼 중 가장 현명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일 범죄현장에 있는 범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경찰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수사관들은 범죄현장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적합한 실행행사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만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제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수사관의 안전 역시 유의하며 시도하여야 한다.²⁷⁴⁾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강화

이미 발생한 범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기타 범죄신고에 관여했던 자가 범인으로부터 신변위협이 있음을 호소해 올 때, 수사경찰은 제반 정보를 통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²⁷⁵⁾. 즉 피해상황에 따른 범죄

273) 박호정, “앞의 논문, 4면.

274)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255면.

의 종류와 경중, 행위자의 전과경력, 행위자의 위험성 정도, 행위자의 환경, 수사 및 공판의 진행상황 등을 기초로 신변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변보호요청을 과소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고, 한편으로 과대평가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단,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되면 통신수사·수법수사·미행 및 잠복 등의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박을 하거나 신변위협을 하는 자의 소재를 탐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신변보호 종합대책을 실시하면서 인력위주였던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신변보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및 가족·친족 등 신변 보호가 필요한 관련자들에게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원하고 있다. 즉 보복범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긴급 호출기를 경찰에서도 지급하도록 확대하였다. 긴급호출기를 착용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호출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접수가 되고 미리 지정해둔 보호자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또한 긴급호출기의 ‘전화 기능’을 이용해 현장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⁷⁵⁾ 또한 검찰과 협동하여 112 시스템에 등록해두고 피해자 신고 당시 시스템에 ‘신변보호대상자’라고 인식한 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호대상자 주거장소 CCTV 설치확충 및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 긴급상황시 화면 송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²⁷⁷⁾

최초 신고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협박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행동요령을 설명해주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긴급통보

275) 김종욱, 앞의 논문, 93-94면.

276) 김학신, 앞의 논문, 139면.

277)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131면.

장치'를 대여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이나 통신내용의 녹음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⁷⁸⁾ 인질강도의 피해자 가족에 감청장비나 통신내용의 녹음을 위한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녹음·녹취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족이 협조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또한 인질과 협상과정에서 가족이 직접 참여할 경우에 흥분하여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²⁷⁹⁾ 이러한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 조사의 구체적 개선방향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때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에 증거수집 차원에서 진술조서작성을 위한 과정이 전개되는데 조서작성과 관련된 면담을 그 이전의 면담행위와 구별하여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각 항목별로 그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조사환경의 개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사생활이 드러나고 가해자와 마주하는데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특히 성범죄를 비롯한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조사 받는 공간은 적어도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피의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대부분 이러한 측면을 외면해 왔다. 그래서 피의자들 이 조사받는 공간에서 피해자도 조사받기 때문에 마치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게 되며 조사받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

278) 조만식, 앞의 논문, 96-98면; 백운용,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4-85면.

279) 조만식, 앞의 논문, 84-85면.

해서 공포감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²⁸⁰⁾

기본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조사에 응해 진술을 하는 장소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장소와는 다른 별개의 전용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피해자의 위압감이나 불쾌감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확충은 단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와 같이 먼저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분리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대면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조사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⁸¹⁾

(2) 피해자 면담방법의 개선

경찰이 현장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가 빈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많다. 수사경찰관이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변화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서적 상황에 맞는 면담기술을 발휘해야만 한다. 비협조적인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필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해자 면담을 통해 수사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이다. 특히 초동수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정한 면담을 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²⁸²⁾

한편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범죄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가 목격상황을 정확히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수사활동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시의 수사행태 개선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방법

280) 김성식, 앞의 논문, 70면.

281) 권순민, 앞의 논문, 479면.

282)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263면.

이나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다.²⁸³⁾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을 한다거나, 성폭력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것, 수사의 효율성만을 의식한 채 단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고자 면접을 강행하는 수사관의 태도 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2차 피해자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수사관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사내용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질문이나 언행은 절대 금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수사 업무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의 수사행태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²⁸⁴⁾ 따라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할연기나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경찰을 상대로 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따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또 다시 보복을 통한 피해사건 발생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꺼려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일단 관할 파출소와 협조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한 다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원인이 피해자의 명예감정 때문인지, 성적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함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설득,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여경수사관의 투입, 범인과의 관계 청산 유도 등을 통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가. 경찰의 독자적 업무영역 발굴

중복예산을 회피하면서도 경찰고유의 사업을 구상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은 기존 법무부 내지 여성

283) 김종욱, 앞의 논문, 98-99면.

284) 김종욱, 앞의 논문, 98-99면.

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차별화할 만한 제도가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서야 활성화되었다는 점도 있으나, 경찰만의 독자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발굴과 정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서 경찰이 타 기관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하는 당위성은 범죄피해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피해자와 가장 먼저 대면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의 ‘현장성’과 ‘즉시성’ 만으로도 경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대변한다. 따라서 범죄피해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범죄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업무상 특수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타기관과 구분되는 경찰만의 독자적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²⁸⁵⁾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을 제안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기개입 초기상담과 관련한 경찰의 노력이 요청된다. 초기상담의 결과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범죄피해자의 미래에 대한 지각, 형사사법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상호작용, 정신건강 등 피해자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 자체적으로 위기개입 초기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상담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담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나 민간영역에서 전문성이 인정된 활동가(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²⁸⁶⁾ 즉, 경찰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민간영역의 유관기관으로 연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민간의 전문상담사들이 동행하는 재가방문 형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상담사들에게는 예산을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상담비용이 요구된다.²⁸⁷⁾

나.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현장에는 수사경찰관만이 항상 먼저 출동하는

285) 장석현, 앞의 연구보고서, 139-140면.

286) 김연수·이재영,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47면.

287) 김연수·이재영, 앞의 논문, 48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피해자 가족이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기도 하고, 소위 골든 타임을 놓치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경찰관이나 소방·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구호조치를 할 때는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²⁸⁸⁾ 따라서 최소한 의료관계자나 긴급구호관서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조치 요령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시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Hot-Line을 개설하는 등 평상시에 긴밀한 협력체재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 경찰서·소방관서·의료기관 등 각 기관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 구호 시 현장보존 요령·응급복구 시 수사상 유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공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이에 관한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위기에 개입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잘 들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의견제시를 함과 동시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제9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형태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동법 제5조).²⁸⁹⁾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기관 실무자와 상호정보를 교환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실무자간 정기적인 모임여부와 타 기관과의 공동운영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실무 현장에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²⁹⁰⁾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경찰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업무 처리지침’이나 ‘피해자보호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288) 김재민, 앞의 논문, 263면.

289) 김재민, “경찰피해자 수사에 있어서의 제도적 수사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35-36면.

290) 김재민, 앞의 논문, 36면.

각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피해자보호시책을 논의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²⁹¹⁾

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의 도입방안

실질적 분쟁해결과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틀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2005년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형사조정을 시행하기 시작하던 중, 2006년 4월 대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일반적 통일지침인 ‘고소사건 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과 일선지청의 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처리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한 표준지침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범시행을 하였다. 그 후 2007년8월부터 전국 57개 검찰청(2014년 현재는 58개 지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을 전면 시행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도 2010년 8월 15일부터 개정·시행됨으로써,²⁹²⁾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화가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시한부 기소중지제도’를 도입하였고, 형사조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대검찰청 지침을 개정하였다(예규 제603호). 그리고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가 신설되어, 국가(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서면 등으로 적극 고지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었다.²⁹³⁾

형사조정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고 수사의 초기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게는 형사조정청구권이 없다. 수사의 초기단계는 검찰직속 사건이 아니고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형사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할 것인데 정작 경찰에게는 형사조정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게는 형사조정 청구권이 없어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도 일단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가 마무리 되어

291) 김재민, 앞의 논문, 36-37면.

29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에서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형사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93) 박현준, 앞의 논문, 172면.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에야 검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제에 회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사조정제에 회부되었는데 형사조정이 성립해 버리면 한편으로 경찰수사는 필요 없는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로서도 경찰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형사조정제에 응할 수도 있는 사건을 현행 법률상 검사가 수사사건을 조정제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필요 없는 조사를 받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손실과 가해자나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조속히 보전받기 위해서 경찰에게도 형사조정제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에 회부하여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사노력을 줄일 수 있고 피의자나 범죄피해자도 수사를 받지 않고 형사조정제에 응할 수 있어 신속히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등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⁹⁴⁾

그러므로 수사절차에서 조정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법 제41조를 개정하여 형사조정제도의 주체를 검사에서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리)으로 확대하여 분쟁사건의 일선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조정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증가하는 조정제도의 수요를 충족하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제2항과의 형평성, 그리고 개정된 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3호·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범죄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등)와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⁹⁵⁾ 형사사건과 고소사건의 대다수의 분쟁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참여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제도의 성과를 기대이상으로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²⁹⁶⁾ 아울러 일선 사법경찰관리들의 조정참여시기의 탄력적 운용은 향후 형사사법체계에서 부담하는 시간적·재정적 부담 등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모두를 거치는 이중적 부담을 덜게 되어 소송경제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²⁹⁷⁾

294) 양경규, 앞의 논문, 174면.

295) 박현준, 앞의 논문, 173면.

296) 박현준, 앞의 논문, 174면.

297) 박현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111면.

제6장 결론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건실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⁸⁾ 수사절차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내의 범죄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형사조정은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형사조정예 회부되는 데, 수사의 초기단계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형사조정의 필요성 또한 경찰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의 신청권자를 당사자,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포함시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²⁹⁹⁾ 그렇게 되면 경찰이 판단하여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기 수사를 하기 이전에 바로 형사조정예 회부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초기수사에서 더 이상 의미없는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로서도 피해의 회복속도가 좋아져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³⁰⁰⁾

2015년 4월 신변보호 종합대책 추진된 이래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 신변경호 및 순찰강화 그리고 안전숙소의 제공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변보호요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변보호요청 사유 등을 사전에 112상황실 시스템에 입력하여 현장경찰이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변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³⁰¹⁾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첫 번째 수사기관으로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298) 도중진,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과학수사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과학수사학회, 2013, 118면.

299) 양경규, 앞의 논문, 175면.

300) 양경규, 앞의 논문, 175면.

301) 백일홍·장규원·박호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260면.

과 동시에, 그들에게 초기에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²⁾ 현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는 강력범죄피해자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강력범죄피해자만 신변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강력범죄피해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신변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신변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안정을 확보하여 빠른 피해 회복과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³⁰³⁾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모든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³⁰⁴⁾ 경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가갈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연결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³⁰⁵⁾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도 현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매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³⁰⁶⁾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경찰활동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³⁰⁷⁾ 범죄발생 시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지역경찰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현장근무자의 근무의지와 근무태도를 변화하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하고, 각종 사건에 관한 매뉴얼을 철저히 갖추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 체계 자체는 물론 압수·수색규정도 개선하여 피해자의 입장

302) 김학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6, 128면.

303) 김학신, 앞의 논문, 128면.

304) 김학신, 앞의 논문, 129면.

305) 김학신, 앞의 논문, 129면.

306) 박호정, 앞의 논문, 6면.

307) 박호정, 앞의 논문, 6면.

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⁰⁸⁾

대부분의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이지만, 범죄의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좋은 방법이다.³⁰⁹⁾ 즉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보호는 범죄자 필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자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8) 박호정, 앞의 논문, 7면.

309) 김학신, 앞의 논문, 130면.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경찰백서」, 2016.
- _____, 「범죄피해자 매뉴얼」, 2015.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제1차 기본계획」, 2007.
- _____,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 2012.
- 김용세, 「피해자학(제4판)」, 형설출판사, 2010.
- 김재민, 「범죄피해자 대책론」, 진리탐구, 2006.
-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2. 논문

- 강경래, “민간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14(2), 한국피해자학회, 2006.
- 강희창,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경제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방향 제언, -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5.
- 공정식, “강력범죄 사건이후 피해자들의 욕구와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9권 제2호, 대한범죄학회, 2015.
- 공정식,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 곽대경/신재현,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

-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권영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김성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성진,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 김순석, “경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년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 김용근, “경찰 수사단계에서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 김용세,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한국형사법학회, 2003.
- 김용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과 발전과정”, 「서울법학」 제5권 제2호,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2002.
-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김용세/박광섭/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김일수,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역학관계”, 「법률구조」 통권 제64호,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
- 김일수, “형법이론의 최근 동향”, 「재판자료」 제49집, 법원도서관, 1990.
- 김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논문, 2003.
- 김재민, “경찰피해자 수사에 있어서의 제도적 수사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6호, 경찰대학, 2004.
- 김재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형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 김지선/김성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2021년)의 방향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 김태경/윤경희, “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 도입”, 「경찰학연구」 제26호, 경찰대학, 2011.
- 김학신,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8.
- 김학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27(2), 미국헌법학회, 2016.
- 김 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김혜정,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조」 제55권 제4호, 법조협회, 2006.
- 김효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현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문정민/김운곤, “경찰 수사단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법학논총」 제1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박광민/강석구,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박병식,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강화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경찰청, 2014.
- 박봉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단계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법학」 제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박봉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학연구」 제42권, 한국법학회, 2011.
- 박상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2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1.
- 박주상, “수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제13집,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5.
- 박한호,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의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14.
- 박행렬,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 박행렬,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박현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 박호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0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 백운용,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백일홍/박호현,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백일홍/장규원/박호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 서정범,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서정범, “행정경찰에의 초대 -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경찰학연구』 제12권 제4호, 경찰대학, 2012.
- 손재영,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5.
- 송병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 2015,
-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심희기,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4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양경규, “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03.
- 여은경,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문제 해결방안”, 『아동가족치료연구』 제8집, 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센터, 2010.
- 오경식,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교정연구』 (67), 한국교정학회, 2015
- 오세연/박원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사례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11.
- 윤형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한국경찰학회, 2004.
- 이봉한, “제도 내외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호, 경찰대학, 2006.

- 김연수/이재영,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15(1),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 이용식,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 이용식,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19(3), 2012.
- 이주희,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이호중, “회복적 사법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임병락,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방안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장규원,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장석현, “경찰의 피해자보호 여건과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15.
- 정우성/김순석, “경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3),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 정 응,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6.
- 정지운,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 정책”,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11.
- 정지운,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 조균석,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최근의 실무 동향”,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기념논문집, 2010.
- 조만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병호,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영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 최영승,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탁종연,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호, 안암법학회, 1993.
- 허선주/조은경,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홍승희, “패러다임 변화와 형법의 변화? : 형법적 패러다임변화의 정당화”, 「안암법학」 제19호, 안암법학회, 2004.
- 황정익,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 Albert Eglash, “Creative Restitution--A Broader Meaning for an Old Term”,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ume 48, 1958.
- Bloch, Ellin L. 「Crisis intervention and trauma response: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

- 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 H. J. Schneider, 「Kriminologie」, 1987.
- Heinz Schöch,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NStZ 1984.
- Horst Schuler-Springorum, Über Victimologie, in: Festschrift für Richard Honig, 1970.
- K.Rebmann, Der Schutz des gefährdeten Zeugen im Strafverfahren Möglichkeiten de lege lata, Erfordernisse de lege ferenda, NJW 1989.
- K.Roxin/B.Schünemann, 「Strafverfahrensrecht」, 27.Aufl., C.H.Beck München, 2012.
-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 Maguire, Mike, and Claire Corbett, “The Effects of Crime and the Work of Victims Support Schemes”, Aldershot, Hants, England: Gower, 1987
- McGarry D. & Smith K., “Police Family Lia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15.
- Peggy M. Tobolowsky, 「Understanding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2000.
-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9.
- Winfried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2.Aufl., C. H. Beck Verlag, 1990.
- 安田貴彦, “警察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対策”, 「警察學論集」 56巻1号, 2003.
- 田村正博,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현황과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5권 제4호, 경찰대학, 2015.
- 早川智之, “警察における被害資連絡制度について”, 「家庭裁判月報」 52巻11号, 2000.
- 川出敏裕, “犯罪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 「現代刑事法」 No.10, 2002.